

<연번1> 냉동 빙어(Frozen smel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050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5.28.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품목번호 Tariff No	0	25% (2019.5.10.-)	50,609	28,062
사례명 Case	NAFTA상, 냉동 빙어의 원산지 표시 및 지위 The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status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of frozen smelt.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냉동빙어에 NAFTA의 적용가능성과 원산지국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사가 소유한 고기잡이배로 캐나다에서 수확한 빙어를 온타리오에 있는 공장으로 운송 2.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사이즈별로 선별하여 냉동하여 포장함 3. 중국에서 수입된 빙어를 해동하여 빙어머리와 내장을 손질하고 다시 포장하여 온타리오로 재수출함 4. 온타리오의 공장에서 검수와 선별 그리고 고객의 포장요청에 따라 재포장함 			
쟁점사항 Issues	냉동빙어의 원산지는 어디이며 NAFTA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NAFTA상의 특혜관세대우와 관련한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일반해석규칙(General Note 12(I))에 따르면 일련의 제조과정에서 상품이 NAFTA영역 외에서 추가 제조나 기타 다른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없음</p> <p>이에 따르면 본 사례의 경우 중국에서 재수출된 냉동빙어에 대한 캐나다에서의 포장 작업은 NAFTA에 따라 특혜대우를 받을 수 없음</p> <p>원산지국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의 원산지국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CBP는 캐나다산 빙어를 중국에서 해동하여 머리 및 내장손질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후, 캐나다로 재수출되어 미국으로 운송시킨 일련의 가공처리 및 운송은 중국에서 캐나다산 빙어에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공정이 없었다고 판단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냉동빙어는 캐나다산임.</p>

<연번2> 냉동가리비(Frozen scallop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40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6.13.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6.13.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0307.22 (추정)	O	25% (2019.5.10.-)	-	7
사례명 Case	냉동가리비에 대한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frozen scallop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냉동가리비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산 가리비는 껍데기가 있는 상태로 냉동되어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개별급속냉동(IQF)과 삼인산나트륨 첨가제를 포함한 수용액에 담가 해동하고 껍데기를 분리시킴 2. 제품을 개수별로 분류하여 소매용 팩에 포장하여 미국으로 운송함 			
쟁점사항 Issues	중국에서의 가공처리가 냉동가리비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왔는지의 여부와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가리비는 일본에서 수확되었고 가공처리는 중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중국에서의 가공처리는 단순가공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CBP는 중국에서의 가공처리로 일본산 가리비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냉동 가리비의 원산지는 일본임.			

**<연번3> 냉동된 반쪽 가리비와 냉동된 가리비살(Frozen Half Shell Scallop and Frozen Scallop Mea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70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7.03.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0307.22 (추정)	O	25% (2019.5.10.-)	-	7
사례명 Case	냉동된 반쪽 가리비와 냉동된 가리비살 The country of origin of frozen half shell scallop and frozen scallop meat			
사실관계 Facts	<p>A는 냉동된 반쪽 가리비와 냉동된 가리비살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p> <p>1.유엔의 주요 어업지역 61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수확된 야생 일본산 가리비로 껍데기가 있는 상태로 냉동되어 중국으로 수출됨 중국에서 가리비의 윗부분 껍데기를 제거하여 아랫부분만 껍데기를 가진 상태가 됨. 이러한 가리비를 깨끗이 씻은 다음 개별로 급속냉동 시킴</p> <p>2.가리비의 외전근(abductor muscles; scallop meat)을 남긴 채 껍데기를 제거한 후 냉동시켜 중국으로 수출시킴 중국에서 해당 가리비를 삼인산나트륨이 포함된 용해제에서 담군 후, 해동시켜 개별적으로 급속 냉동시킴</p>			
쟁점사항 Issues	냉동된 반쪽 가리비와 냉동된 가리비살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p>			

	<p>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1번째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보면, 가리비는 일본에서 수확하여 중국에서 가공처리를 거침. 이후, 재냉동시켜 미국으로 운송됨 여기서 가리비는 중국에서의 가공처리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일본임</p> <p>2번째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보면, 가리비는 일본에서 수확되고 가공 처리됨. 이후 중국으로 수출되어 그곳에서 삼인산나트륨이 포함된 용해제에 담군 후, 냉동시켜 미국으로 운송함 여기서 중국에서의 가공처리로 가리비에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완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시나리오1과 2 모두 원산지는 일본임.</p>

<연번4>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1463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참조규칙 References	N245725		
2018.11.26.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0802.62.0000	○	25% (2019.5.10.-)	-	-
사례명 Case	원산지 및 미국산 마카다미아 너트에 관한 무역 프로그램 또는 무역 협정의 적용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application of a Trade Program or Trade Agreement pertaining to macadamia nuts from the United State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원산지 결정 및 무역 프로그램 또는 무역 협정의 적용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에서 재배 및 수확한 가공되지 않은 마카다미아 너트를 중국에 있는 가공 업체에 운송함 2. 중국에서 마카다미아 너트를 하역한 후, 가공업자는 순중량 25파운드의 골판지 상자 안의 호일 라이너에서 껍질을 벗기고 포장함. 껍질을 벗긴 마카다미아에 첨가된 추가재료는 없으며 재포장 이외의 다른 가공처리는 없음. 3. 미국으로 재운송 후, 다른 식품제조업체에 판매되거나 B사에서 생산되는 소매용 상품으로 이용됨 <p>견과류의 껍질을 벗기고 재포장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음.</p>			
쟁점사항 Issues	마카다미아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CBP의 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호 9801 “되돌아온 미국 상품” (또는 무역프로그램 또는 무역협정의 적용)은 상태 개선이나 가치상승을 거쳐야 하므로 적용되지 않음</p> <p>-호 9802 (수리 및 대체)는 중국에서의 가공이 수리나 대체와 달리 완성품의 상품에서 중간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적용되지 않음</p> <p>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1974년 무역법 301의 무역구제의 범위에서 껍질을 벗긴 미국산 마카다미아 너트는 면제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마카다미아 너트의 원산지는 미국임.			

<연번5> 가공된 게살(Processed crabmea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8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7.19.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1605.10 (추정)	O	25% (2019.5.10.-)	5,480	2,371
사례명 Case	가공된 게살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processed crabmeat			
사실관계 Facts	<p>A사는 가공된 게살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중국산 홍색민꽃게(Red Swimming Crabs)의 껍데기, 집게발과 아가미를 제거한 후, 냉동시켜 베트남으로 수출함 2.베트남에서 냉동한 게를 해동시켜 세척하고, 요리하여 공랭(air-cooled), 냉장 그리고 발라낸 게살을 캔이나 파우치에 포장함 			
쟁점사항 Issues	가공게살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산 홍색민꽃게는 이미 중국에서 해체되었고, 베트남으로 운송할 시, 이미 전체적인 게의 형태가 아님</p> <p>따라서 베트남에서의 가공처리는 중국산 홍색민꽃게에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완성품의 원산지는 중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가공게살의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6> 절인 냉동새우(Frozen marinated shrimp)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721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7.11.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1605.21 (추정)	O	25% (2019.5.10.-)	123	57
1605.29 (추정)	O	25% (2019.5.10.-)	136	123
사례명 Case	절인 냉동새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frozen marinate shrimp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절인 냉동새우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식 흰다리새우를 에콰도르에서 수확하여 머리 부분을 손질한 후 냉동시켜 중국으로 운송함 2. 중국에서 흰다리새우를 해동시킨 후, 껍질을 벗기고, 내장 손질을 한 후 절여 냉동하여 재포장한 후 미국으로 수출함 			
쟁점사항 Issues	절인 냉동새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에콰도르산 새우에 대한 중국에서의 가공처리는 단지 껍질을 벗기고 내장 손질을 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절인 냉동 새우의 원산지는 에콰도르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절인 냉동새우의 원산지는 에콰도르임.			

<연번7> 푸쉬팝 캔디 테이프(Push pop candy tap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233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3.04.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품목번호 Tariff No	○	25% (2019.5.10.-)	2,087	1,055
1704.90.3550				
사례명 Case	스페인산 푸쉬팝 캔디 테이프에 대한 원산지국 및 품목분류 The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Push Pop Candy Tape from Spain			
사실관계 Facts	<p>A사는 푸시 팝 캔디 테이프의 원산지와 표시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대상 상품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수입된, 벨트, 고무진이 묻은 테이프 그리고 감초캔디로 소비자가 캔디를 원하는 길이로 꺼내어 잘라낼 수 있음</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페인산 캔디를 중국으로 운송 2. 중국에서 해당 캔디를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 중국산인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함 			
쟁점사항 Issues	푸쉬팝 캔디 테이프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푸쉬팝 캔디 테이프는 캔디가 제조된 국가의 상품으로 캔디를 사이즈에 맞게 자르고 용기에 담은 가공처리는 이러한 상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는다고 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푸쉬팝 캔디 테이프의 원산지는 스페인임. 상품에 대한 표시는 “스페인산,” “스페인상품” 또는 기타 다른 유사한 의미로 표시되어야 함.			

<연번8> 사탕(Village holly berries candy)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616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2019.04.24.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1704.90.3550	○	25% (2019.5.10.-)	2,087	1,055
사례명 Case	캐나다의 “Village Holly Berries“의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에 따른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및 상태; 제 509 조 The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status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of “Village Holly Berries” from Canada; Article 509			
사실관계 Facts	상품 Village Holly Berries에 대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자격,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 대상 상품은 Village Holly Berries라고 불리는 사탕으로 잎 모양의 녹색 및 불 모양의 빨간 사탕으로 유리병에 포장되어 판매됨. 상품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1. 텍스트로스, 포도당(옥수수 시럽) 2. 씨트릭산, 칼슘 스테아르산염, 타피오카 텍스트린 3. 이산화티탄, 과당 유약, 카나우바 왁스(canauba wax) 4. 인공 향료 및 색소 해당 상품에 대한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캐나다에서 Village Holly Berries 사탕을 제조 2. 중국에서 해당 사탕을 유리병으로 포장함 3. 포장된 제품을 캐나다로 재 운송한 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Issues	Village Holly Berries 사탕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General Note 12(b)(19 U.S.C. § 1202)는 관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미국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NAFTA 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인한 상품”으로서 관세율표에서 규정된 관세처리 및 양적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됨 (i) 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또는 (ii) 캐나다, 멕시코 및 / 또는 미국 영토에서 변형되어			

	<p>2. General Note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 비원산지 물질로 (r),(s),(t)에 규정된 품목이 변경됨</p> <p>3. 품목분류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상품이 General Note의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상품은 (r),(s) 및 (t)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킴</p> <p>(iii) 원산지 재료로 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임</p> <p>(iv) 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지만 부품 규정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가 하나 이상 그러한 상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 품목 분류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p> <p>General Note 12(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의 연속과정에서 하역, 재적재 또는 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역에서 상품을 운송하거나 상품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다른 작업 또는 추가 공정 작업이 NAFTA 협정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캐나다산 캔디가 중국에서 거치는 소매용 포장은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보다 광범위함 -이러한 활동은 수출시, 상태에 대한 최종 판매를 위한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HTSUS, General Note12(t)/에서 허용되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공정을 넘어서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부록 181의 16장에 따라 캐나다 사탕은 NAFTA 특혜 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음.</p> <p>다음으로 표시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상품이 NAFTA 협정국의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표시규칙은 관세규정 102 part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표시요건은 관세규정 134 part에 규정되어 있음.</p> <p>따라서 102 part에서 규정하고 있는 NAFTA 표시규칙에 따라 Village Holly Berries 사탕의 표시목적에 참고해야 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VVillage Holly Berries 사탕의 원산지는 캐나다임.

<연번9> 생선오일캡슐(Encapsulated Fish Oil)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309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N287514 H284694 H233356 N017772 H735146 H078175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2106.90.9898 (추정)	O	15% (2019.9.1.-)	22,907	15,565
사례명 Case	NY N287514결정의 취소; 원산지표시; 생선오일 캡슐 Revocation of NY N287514; Country of Origin Marking; Encapsulated Fish Oil			
사실관계 Facts	<p>※N287514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해당 결정을 철회함. 본 결정에서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처리가 실질적인 변형을 주었으며 따라서 문제의 대상인 생선오일캡슐이 중국산이라고 결정함.</p> <p>결정배경은 다음과 같음.</p> <p>-Peruvian anchoveta에서 추출한 오일을 정제, 표백화, 냉여과(cold filtrated), 탈취 및 해바라기오일과 d-알파 토크페롤 (비타민 E)으로 혼합한 후 중국으로 운송함</p> <p>-중국에서는 생선오일을 연질 젤라틴 캡슐에 채우고 캡슐화시킨 생선오일을 각각 60, 200캡슐을 담은 소매용 사이즈의 병에 담아 미국으로 수출함</p> <p>-중국에 있는 시설에서 수행된 가공처리는 생선오일을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보아 CBP 표시 목적상, 생선오일 캡슐은 중국산이라고 봄</p>			
쟁점사항 Issues	생선오일 캡슐의 원산지는 어디인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CBP는 제약품과 같은 화학제품제조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일관적으로 가공처리의 복잡성과 최종 제품이 본질적 성질과 원재료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페루산 생선오일을 중국에서 캡슐화하는 공정처리를 하였고 캡슐화되기 전과 후 “생선오일”로 지칭된 상품이기에 때문에 중국에서 품명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화학적·물질적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캡슐화 가공처리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페루임.</p>

<연번10> 삼나무 목재(Cedar lumb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765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6.21.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4407.19	○	25% (2019.5.10.-)	-	14
사례명 Case	삼나무 목재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Japanese cedar lumber			
사실관계 Facts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산 삼나무에 대한 추가 작업이 일본에서 수행됨. 이러한 추가 작업에는 가공 가능한 길이로 절단하고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함 2. 절단한 통나무를 적재하여 중국으로 운송하여 치수 재목(dimensional lumber)으로 가공함. 즉, 목재 결을 따라 세로로 2x4 판의 직사각형 모양의 개별 판자를 만듦 			
쟁점사항 Issues	삼나무 목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품목분류와 관련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일본에서 수확한 삼나무를 가공 가능한 길이로 절단하고 부분적으로 나무껍질을 벗김. 이러한 통나무는 HTSUS, 4403으로 분류되며 중국에서 이루어진 가공처리는 목재 결에 따라 치수 재목으로 가공함. 여기서 치수재목 HTSUS, 4407로 분류됨</p> <p>원산지국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수확한 나무에 대한 원산지는 일본이지만 수확한 통나무에 대한 중국에서의 가공 처리는 통나무와 치수재목과는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판단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수입된 목재의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11> 초순도의 광물조각(Super fine mica flak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327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28508 561103 N011170 N111878		
2019.09.10.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2525 (추정)	O	25% (2019.5.10.-)	237	71
사례명 Case	초순도의 광물조각의 원산지; Section 301 무역구제; 9903.88.03, HTSUS Country of origin of super fine mica flake; Section 301 trade remedy; 9903.88.03, HTSU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초순도 광물조각의 원산지가 어딘지에 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미가공 백운모 2. 캐나다로 수입 시, 중국산 미가공백운모는 층 또는 판으로 이루어진 물리적 구조를 가짐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캐나다에서 중국산 조각한 광물조각을 전용가공처리라인에서 가공처리 함 2. 광물 파편을 제트분쇄기로 이동시켜 325mesh screen을 통과 가능할 때까지 분쇄 시킴 3. 분쇄된 광물을 포장한 후 미국으로 운송됨 			
쟁점사항 Issues	301조의 적용 목적상, 초순도 광물에 대한 원산지는 어딘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해당 상품에 대한 301조 적용 여부에 대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음.</p> <p>-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을 할 때, “실질적인 변형분석” 이 적용됨. 이에 따르면 중국산인 조각한 광물 조각이 캐나다에서 가공처리로 초순도 광물로 가공되었을 때, 품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봄</p> <p>즉 두 개의 상품 모두 “광물” 이라는 품명을 가짐</p> <p>법원은 상품의 용도 및 특성이 가공 전, 이미 결정된 경우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함</p> <p>참고판례: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t. Int’ l Trade 1987) (“Superior Wire”)</p> <p>또한 두 개의 상품은 동일한 화학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제트분쇄기를 통해 조각한 광물을 초순도의 광물로 변경된 것은 특성의 변형으로 보지 않음</p> <p>참고자료: New York Ruling Letter (“NY”) N011170, dated June 5, 2007</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실질적인 변형분석에서 비용이 추가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주요 고려요소는 상품의 품명, 특성 그리고 용도시험임</p> <p>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HTSUS, 9903.88.03의 적용 목적상, 초순도의 광석의 원산지는 중국임. 따라서 301조의 적용을 받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12> 리오넬 블루 ES(Lionel Blue 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86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Classificatio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9.17.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3204.17.9086	O	25% (2019.5.10.-)	10,264	8,426
사례명 Case	리오넬 블루 ES의 원산지 및 품목 Country of origin and classification of "Lionel Blue E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Lionel Blue ES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됨. 중국에서 생산된 착색제로 중국과 일본산인 다양한 원재료와 혼합됨(중국산 원재료는 안료 A로 묘사함)</p>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죽:(용제염 밀링; solvent salt milling). 비가공 안료 A, 소금, 폴리올 2. 밀링:(해머 밀) 3. 슬러리 및 산화 처리 4. 여과 및 철 제거 5. 건조 및 포장 			
쟁점사항 Issues	리오넬 블루 ES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과 일본산인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본에서 수행한 가공처리는 중국산의 주요 안료 재료에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p> <p>따라서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중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13> 그린-LS 착색제(Green-LS coloran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55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8.28.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3204.17 (추정)	O	25% (2019.5.10.-)	24,930	16,954
사례명 Case	TP5270 GREEN-LS Colorant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 of “TP5270 GREEN-LS Colorant”			
사실관계 Facts	<p>A사는 TP5270 GREEN-LS Colorant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p>제품의 재료 생산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색제는 중국, 일본 그리고 미확인 국가의 다양한 원자재를 통합하여 일본에서 생산됨 - 착색제로 사용된 재료는 중국의 안료 JZF-8375, 일본의 스테아르 산 칼슘 및 미확인 국가의 스테아르산 아연임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미가공의 원료 A(중간체 1)는 니딩공정(kneading process)을 통해 스테아르산 아연 및 스테아르산 칼슘과 결합됨 2. 이러한 결합으로 화학적 반응은 없었음 			
쟁점사항 Issues	착색제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 일본 및 미확인 국가의 원료로 일본에서 “TP5270 GREEN-LS Colorant“를 생산한 과정은 중국산의 주요 안료 물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음</p> <p>따라서 대상 품목의 원산지 국가는 중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14> 유기농 안료(Lionel blue FG-7330 pigmen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29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4.02.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3204.17 (추정)	○	25% (2019.5.10.-)	24,930	16,954
사례명 Case	일본산 Lionel Blue FG-7330 Pigment에 대한 원산지국 Country of origin of “Lionel Blue FG-7330 Pigment” from Japan			
사실관계 Facts	<p>A사는 Lionel Blue FG-7330 Pigment(안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p>안료 재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 Phthalocyanine Crude A 2. 중국산 Phthalocyanine Crude B와 부자재 <p>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을 포함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동식 분쇄기 의한 건식 제분 2. 반죽기에 의한 소금 제분 3. 압착식 여과기 및 reslurry에 의한 정제 4. 분무 및 염색 			
쟁점사항 Issues	안료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Lionel Blue FG-7330 Pigment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산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수행한 공정과정은 다른 새로운 품명,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진 상품이 되었다고 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일본임.			

<연번15> 바디 스프레이 미스트(Body spray mist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1656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2018.11.28.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3303.00 (추정)	O	25% (2019.5.10.-)	2018년 94	2019년(6월) 7
사례명 Case	바디 스프레이 미스트의 원산지 표시 The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Body Spray Mist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특정 수입된 바디스프레이미스트에 원산지 표시로서 “싱가포르산”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산” 표시가 용인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다섯 가지 상품은 아래와 같음.</p> <p>1.향수 (일본 벚꽃 - 1 oz.) 2.콜롱 (Midnight Reign- 1 oz.) 3.향수 (Twilight Mist - 3.2 oz.) 4.콜롱 (Black - 3.4 oz.) 5.향수 (일본 벚꽃 - 1.7 oz.)</p> <p>:위 다섯 가지 상품 모두 현재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에서 공급되고 있는 단일 향수 베이스로 구성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수행되는 가공처리는 단일 베이스를 알코올, 물 그리고 플로필렌 글리콜과의 혼합으로 이루어짐 2. 혼합된 재료는 프로펠러가 부착된 에어로젤 스프레이 캔이나 펌프 형태의 병에 담김 3. 분무 기구에 적합할 수 있도록 향수의 점도를 변경하는 블렌딩 가공처리를 함 4. 이러한 가공과정에서 화학반응, 구조 변화 또는 베이스의 혼합이 발생하지는 않음 			
쟁점사항 Issues	외국산 단일 향수 베이스에 기타 물질을 혼합한 바디 스프레이 미스트의 원산지 표시 방법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 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의 원산지국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p>			

	<p>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완성된 향기는 향수 베이스를 희석시킴으로써 스프레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향수 베이스와 동일한 화학적 특성과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음</p> <p>이 사안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농도와 점도의 변화는 원산지 목적상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지 아니함</p> <p>따라서 단일 향수 또는 콜롱, 향수 베이스는 바디미스트 스프레이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함. 본질적 특성이 향수 또는 콜롱 향수 베이스에 남아 있다고 본 것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바디 스프레이 미스트의 원산지국은 싱가포르 또는 오스트리아임.</p>

<연번16> 립스틱(Lipstick)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1371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2018.11.02.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3304.10 (추정)	O	25% (2019.5.10.-)	2018년	2019년(6월)
3304.10 (추정)			19,498	18,052
사례명 Case	립스틱의 원산지 표시 The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Lipstick			
사실관계 Facts	<p>A는 립스틱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과 제조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산 대량의 립스틱 덩어리를 소매용 포장을 위한 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운송 2. 미국산 립스틱 덩어리에 열을 가해 중국산 튜브와 뚜껑을 이용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하는 과정을 거침 			
쟁점사항 Issues	립스틱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 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p> <p>미국산 대량 립스틱 덩어리와 분말은 중국으로 운송된 후, 중국에서 측정·용해 혹은 용기에 담은 일련의 가공작업으로 그 특성이나 용도에 변형을 주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립스틱의 원산지는 미국임.			

<연번17> 화장품(Cosmetic product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86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J86656 N301371 N036535		
	변경규칙 Modifies			
2019.02.27.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3304.10 (추정)	○	25% (2019.5.10.-)	19,498	18,052
3304.20 (추정)	○	25% (2019.5.10.-)	93,984	47,767
3304.91 (추정)	○	25% (2019.5.10.-)	8,121	5,919
사례명 Case	한국산 화장품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cosmetic products from South Kore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4개의 화장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품목은 4가지로 나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목: 압축된 화장품 파우더 2. 품목: 립스틱 3. 품목: 마스크라, 립글로스 및 아이라이너 4. 품목: 아이브로펜슬 <p>4가지 품목에 대한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4개 품목에 대한 가공처리는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축된(화장품)분말 가공; 2. 립스틱을 위한 고온 충전 공정; 3. 마스크라, 립글로스 및 탱크(tank) 아이라이너에 대한 충전 공정; 4. 눈썹연필에 대한 압출 기술 처리 4가지 가공기술에 따라 한국산 대량 원재료는 한국에서 계량화되어 저장됨 - 중국에서의 가공처리는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압축 화장품에 추가 첨가된 재료가 없으며 파우더는 알루미늄 용기에 압축되어 채움. 용기는 플라스틱 컴팩트에 접착됨 2. 고온 충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성분이 첨가되지 않음 - 냉각된 립스틱이 차가워진 후, 틀에서 분리시킴. 검수 후, 포장하여 라벨을 붙임 3. 충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립글로스와 아이라이너에 추가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으며 병에 채운 후, 뚜껑을 덮어 소매포장 후 라벨을 붙임 			
쟁점사항 Issues	화장품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p>법과해석 Law And Analysis</p>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압착 가루; 2) 립스틱, 3) 마스크라, 4) 립글로스, 5) 아이라이너에 대한 중국에서의 가공처리와 포장은 새로운 성분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다른 새로운 품목, 특성 그리고 용도를 가진 상업품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화장품의 원산지는 한국임.</p>

<연번18> 유아용 점토세트(play-Doh playset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261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6.05.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9월)
3407.00.2000 (추정)	X	0%	314	367
사례명 Case	4개의 유아용 점토 세트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 of 4 Play-Doh playset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4개의 유아용 점토세트에 대한 원산지국에 대한 판결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제품 1: 5개 캔의 유아용 모형제작 화합물(modelling compound), 1개의 플라스틱 칫솔, 1개의 플라스틱 베이스(base), 1개의 플라스틱 거울, 1개의 플라스틱 롤러, 그리고 1개의 플라스틱 치아 틀</p> <p>제품 2: 5개 캔의 유아용 모형제작 화합물(modelling compound), 1개의 플라스틱 쿠키 타워 베이스, 5개의 플라스틱 유아용 쿠키 커터, 1개의 플라스틱 롤링 핀, 1개의 플라스틱 쿠키 롤링 스탬퍼, 1개의 플라스틱 프로스팅 툴(frosting tool), 1개의 플라스틱 프로스팅 나이프(frosting knife), 2개의 플라스틱 접시 그리고 2개의 유아용 제작 레시피 카드</p> <p>제품 3: 6개 캔의 유아용 모형제작 화합물(modelling compound), 2개 캔의 유아용 모형제작 화합물(modelling compound), 1개의 플라스틱 아이스크림 메이커 베이스, 6개의 플라스틱 아이스크림 콘, 5개의 플라스틱 접시, 4개의 플라스틱 스푼, 그리고 2개의 유아용 제작 레시피 카드</p> <p>제품 4: 4개 캔의 유아용 모형제작 화합물(modelling compound), 1개의 플라스틱 자갈 분쇄기 받침대, 1개의 플라스틱 장난감 덤프 트럭 그리고 1개의 플라스틱 장난감 스티م 롤러 트럭</p> <p>재료 원산지 및 운송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1. 점토세트는 베트남에서 원자재로 제조되었으며 유아용 모형제작 화합물 캔과 뚜껑은 중국산으로 베트남에서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미국으로 운송됨</p>			
쟁점사항 Issues	유아용 점토세트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4개의 유아용 세트와 관련하여 베트남산 구성품에 중국산 유아용 모형제작 화학물 캔의 추가는 구별되는(distinctive) 품명,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진 새 상품이 됨. 따라서 관세목적상, 해당 상품은 중국산임</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 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4개의 세트제품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품은 소매용 세트로 함께 포장된 결과로 그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음. 소매용 세트로서 세트의 바깥 포장에는 세트에 포함된 개별 구성품의 원산지를 눈에 띄도록 표시해야 함. 따라서 세트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중국산인 상품으로 베트남에서 포장” 이라고 표시하고 유아용 점토 화합물의 개별 캔에 대해서는 “중국산” 이라고 표시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19> 실내용 스프레이(Room spray)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688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8.29.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3307.49.0000	○	25% (2019.5.10.-)	2,866	1,374
사례명 Case	베트남산 실내용 스프레이 원산지 및 품목 분류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Room Spray from Vietnam)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실내용 스프레이로 공기 청정제로 사용되는 것임</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 77.7 %(베트남) 2. PEG-40 11.0 %(미국) 3. 에탄올 9.0 %(인도) 4. 향유(fragrance oil) 2.0 %(미국) 5. 요소(Urea) 0.3 %(중국)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유는 대략 19개의 다른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에서 제조됨 2. 상기 재료들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완성된 실내용 스프레이로 제조함 3. 미국산 향유에 알코올 및 물로 희석되어 박테리아나 곰팡이로부터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이 추가됨 			
쟁점사항 Issues	실내용 스프레이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수입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방향유혼합물에 의해 부여됨</p> <p>중국과 베트남에서 수행된 작업은 단순히 희석, 보존 및 병에 담는 것임</p> <p>- 다른 에센스나 향유가 미국산 향유에 추가되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미국임.			

<연번20> 종이 가방(Paper bag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702	카테고리 Category	Country of Origin, Classification
	참조규칙 References	559964		
2019.04.22.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4819.40.0040	○	25% (2019.5.10.-)	1,856	730
사례명 Case	종이 가방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The tariff country of origin and classification of paper bags			
사실관계 Facts	<p>A사의 종이가방(선물 가방용)에 관한 원산지와 품목분류에 관한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종이를 제조하고 잘라내어 모양을 만들고 인쇄하여 구멍을 뚫어 기계로 접음 2. 베트남으로 종이를 운송하여 접착(베트남산 접착제), 회색판(grey boards)삽입(베트남산 안정 페이퍼보드(stabilizing paperboard)), 손잡이 제조 및 연결한 후, 운송을 위한 포장을 함 			
쟁점사항 Issues	선물용 종이가방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비조립 가방상품으로 베트남에서의 공정은 비조립된 가방을 고정하여 손잡이를 부착하는 공정을 수행하였으나 마무리 작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봄</p> <p>대신, 중국에서 종이를 자르고 기계로 접는 등의 행위가 종이가방에 실질적인 변형을 주었다고 판단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선물용 종이가방의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21> 석영판 조리대(Quartz countertop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3280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N101559		
2019.04.25.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6810.99 (추정)	O	25% (2019.5.10.-)	26,243	18,966
사례명 Case	석영판 조리대의 원산지; 301조의 적용;9903.88.03, HTSUS Country of origin of quartz countertops; Section 301 trade remedy; 9903.88.03, HTSU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석영판 조리대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산 석영판 덩어리를 중국으로 수출 - 수출 시, 이 석판은 약 56.5㎝x120㎝으로 측정됨 2. 중국에서 석판을 22㎝에서 24㎝깊이로 절단하고 주문방식으로 주방이나 욕실 세면대의 사이에 맞게 또한 절단함 최종 조리대 설계에 따라 구멍을 내어 싱크대 및 수도 설치를 위해 판을 절단함 절단한 이후, 작업장에서 조리대를 연마함 			
쟁점사항 Issues	미국산 석영판이 중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는지의 여부 절단하고 연마한 석영판이 미국산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301조 적용을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때, 실질적인 변형분석이 적용될 수 있음.</p> <p>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은 상품이 가공 이전 상품이 가지고 있는 품명, 특성 또는 용도를 다른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는지의 여부임</p> <p>참고판례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 d, 989 F.2d 1201 (Fed. Cir. 1993).</p> <p>법원은 제품의 특성 및 용도가 제조된 재료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경우, 실질적인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봄</p> <p>참고판례: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t. Int'l Trade 1987), aff' d 867 F.2d 1409 (Fed. Cir. 1989)</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순간 응집된 석영판은 부엌 및 욕실 세면대로서 최종용도를 갖춘 상태임(두께, 강도 그리고 완성품의 외관이 이미 주어진 상태)</p>			

	<p>중국에서의 가공처리는 판을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고 고정을 위한 홈을 만든 것에 불과한 단순한 작업임 참고판례:N101559(한국산으로 인정) 따라서 미국산 석영판에 대한 중국에서의 가공처리는 단순한 작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석영판 조리대의 원산지는 미국산임.</p>

<연번22> 단열처리 유리(Insulating Glass Unit, IGU)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542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4.18.	변경규칙 Modifies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7008.00 (추정)	○	15% (2019.9.1.-)	2018년 260	2019년(6월) 44
사례명 Case	단열처리 유리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n insulating glass unit (IGU)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단열 처리된 유리에 대한 원산지 결정에 대한 요청을 함. 품목번호는 78IZ228-627-S임.</p> <p>단열처리 유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 강화유리의 외부 유리패널, 유향수지 2. 중국산 투명 플로트(float) 유리의 내부 유리패널, 내·외부 납으로 만든 틀 3. 미국산 알루미늄 스페이서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열처리 유리는 한국에서 제조되고 조립됨 -중양 유리 패널를 유연한 스페이서의 홈에 끼워 넣음; 두 개의 강화유리 패널 사이에 유연한 스페이서로 코어를 밀봉. 유리판을 밀봉하기 위해 스페이서 패쇄 부분을 압착하고 겹침. 봉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산업용 오븐을 통해 밀봉된 유리판에 가열을 함. 이후 단열된 유리를 식힌 후, 뒷면에 2차 밀봉층을 적합시킴 2. 완성된 단열처리유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함 			
쟁점사항 Issues	단열처리된 유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해당 사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p> <p>단열 처리된 유리인, 품목번호 78IZ228-627는 한국에서 추가 공정과정을 거쳐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단열처리 유리의 원산지는 한국임.			

<연번23> 고무머리끈(Elastic ponytail holde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00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2.07.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5609.00.3000	O	25% (2019.5.10.-)	156	83
사례명 Case	고무머리끈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그리고 표시 The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and marking for elastic ponytail holder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고무머리끈에 대한 원산지와 그에 따른 표시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ems 10938과 10939는 100% 폴리에스테르사로 구성된 편조 섬유 커버가 있는 이소프렌 고무심으로 구성된 검정색의 4mm의 고무머리끈임 -item 43776은 100% 폴리에스테르사로 구성된 편조 섬유 커버가 있는 이소프렌 고무심으로 구성된 검은색의 2mm의 고무머리끈임 -item 16132는 100% 폴리에스테르사로 구성된 편조 섬유 커버가 있는 이소프렌 고무심으로 구성된 검은색의 2mm의 고무머리끈임 <p>품목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모든 고무머리끈에 적용 가능한 소호는 5609.00.3000임</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무실(rubber thread)은 100% 가황 처리된 이소프렌 고무로 만들어졌으며 최대 단면 치수가 3mm인 끈으로 절단하여 포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정은 중국에서 수행됨 2. 중국산인 폴리에스테르사 합성수지를 압출하여 특별한 질감이 나도록 함 두 개의 필라멘트를 단일의 가닥인 폴리스테르사로 꼰 실을 염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된 폴리에스테르사를 감아 수출하기 위해 포장함 -모든 공정은 베트남에서 수행됨 3. 고무심에 폴리에스테르사를 덮어 뜨개질하고,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고리를 만들기 위해 서로 이어 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머리끈을 운송과 판매를 위해 포장함 -마지막 공정은 중국에서 수행됨 			
쟁점사항 Issues	고무머리끈에 대한 원산지와 그에 따른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물 또는 섬유류의 원산지는 102.21(c)(1)에서 (5)에 규정된 순서대로 일반규칙의 적용에 따라 결정됨 <p>(c)(1)은 “직물 또는 의류품의 원산지는 상품이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단일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 라고 규정하고 있음</p>			

	<p>이러한 이유로 해당 상품은 단일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2.21(c)(1)항을 적용할 수 없음</p> <p>(c)(2)에서는 “직물 또는 의류품의 원산지가 본 장의 (c)(1)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에 통합된 외국산이 품목분류에서 적용 가능한 변경을 거치거나, 그리고/또는 (e)에 명시된 상품을 위해 특정된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한 단일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 라고 규정함</p> <p>(e)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섬유 또는 의류품의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u>5609(1)</u> 끈을 포함한 가는 실(filaments)의 경우, 5609로 분류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끈을 포함하여 가는 실을 압출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임</p> <p>머리끈을 감싸고 있는 직물은 중국산 100%폴리에스터사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실은 베트남에서 압출됨 따라서 최종 완성품인 머리끈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p>표시와 관련한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1304 (a)(3)(D) 및 134.32(d)에 따라 물품이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상품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고 구매자가 패키지 형태로 고무머리끈의 원산지를 알 수 있다면 개별 고무머리끈은 19 U.S.C.1304 (a)(3)(D)와 19 C.F.R.134.32(d)에 따라 표시의 예외사항이 됨.</p> <p>따라서 고무머리끈이 담긴 소매용 포장에 대한 표시는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에 대한 표시는 “베트남산” 으로 표시되어야 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p>완성된 머리끈에 대한 원산지는 베트남임. 표시는 베트남산으로 표시.</p>

<연번24> 시트 및 베갯잇(Sheet and Pillowcas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87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560676		
2019.07.12.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6302.21	O	15% (2019.9.1.-)	96	72
6302.31	O	15% (2019.9.1.-)	32	7
사례명 Case	시트와 베갯잇의 원산지와 표시; 19 CFR 102.21, 19 CFR 134.46 The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 of sheets and pillow cases; 19 CFR 102.21, 19 CFR 134.46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수입 시트 및 베갯잇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적절성에 판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키스탄에서 100% 코튼 직물로 직조함 -미가공 직물은 홍콩으로 운송되었고 이후 직물은 홍콩에서 중국으로 운송됨 중국에서 직물을 인쇄 및/또는 보풀을 만든 다른 직물과 함께 표백, 염색 그리고 수축시킴. 직물을 잘라 시트와 베갯잇을 봉제하여 완성함(자수를 넣거나 넣지 않음) <p>품목분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13개의 품목에 대해 6302.21과 6302.31 두 개의 품목으로 분류됨</p>			
쟁점사항 Issues	시트와 베갯잇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직물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직물 또는 의료품의 원산지는 102.21조의 (c)(1)에서 (5)에 규정된 일반 규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결정됨</p> <p>-102.21의 (c)(1)에서 “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는 그러한 제품이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음</p> <p>-(c)(2)에서는 (c)(1)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산인 제품이 해당 품목에 결합되면서 품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기타 다른 요건사항을 충족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그러한 품목이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가 된다고 함</p> <p>HTSUS, 6302.21과 6302.31은 (e)(2), 즉 “직물제조공정” 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원칙에 포함되지 않음</p> <p>즉, 시트와 베갯잇을 구성하는 직물은 단일국가에서 형성되었고 따라서 원산지는 파키스탄에 부여됨</p>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시트 및 베갯잇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파키스탄이어야 함</p> <p>덧붙여 “파키스탄에서 제조된 직물, 중국에서 절단 및 봉제” 라고 하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시트와 베갯잇의 원산지는 파키스탄임.

<연번25> 시트세트(Sheet se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269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6.05.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6302.22.2010	O	15% (2019.9.1.-)	9	-
6302.22.2020	O	15% (2019.9.1.-)	-	-
사례명 Case	중국산 시트세트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및 표시 The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 of sheet sets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트세트는 100% 폴리스터로 짠 중국산 섬유로 핑크 플라밍고(홍학) 무늬를 프린트함. 여기에 추가 섬유마무리처리 또한 중국에서 수행됨 2. 중국산 섬유에 대한 가공처리(바느질)는 캄보디아에서 수행됨. 그 외 세트가방 외부에는 설명서, 주의사항, 가격, 수입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캄보디아산” 접착제라벨을 붙임. 완성된 제품은 캐나다로 수출함 <p>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음. 시트세트의 구성은 2개의 표준 베갯잇, 맞춤 시트 그리고 더블침대에 맞는 크기의 플랫(flat)시트임</p>			
쟁점사항 Issues	시트세트는 품목분류상 어디에 속하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HTSUS의 공식적인 해석을 구성하는 설명문(Explanatory Notes)은 주(Note)(X)에서 규칙 3(b)에 따라 “소매용 판매를 위해 포함된 상품은 다음을 의미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단,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성 (2)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모은 제품 또는 상품으로 구성 (3) 재포장 없이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배치 <p>사안과 관련하여 시트세트는 세트의 구성품이 동일 소호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매용을 위한 세트로 묶인 상품으로 볼 수 없음</p> <p>따라서 베갯잇은 HTSUS, 6302.22.2010으로 분류되며 맞춤 및 플랫시트는 6302.22.2020으로 분류됨</p>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는 102.21조의 (c)(1)에서 (5)에 규정된 일반 규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결정됨</p>			

	<p>-102.21의 (c)(1)에서 “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는 그러한 제품이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음</p> <p>-(c)(2)에서는 (c)(1)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산인 제품이 해당 품목에 결합되면서 품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기타 다른 요건사항을 충족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그러한 품목이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가 된다고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우선 상품을 구성하는 직물에 대해서는 직물제조과정이 이루어진 곳이 원산지이며 베갯잇과 시트를 구성하는 섬유는 한 국가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원산지는 중국임</p> <p>표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표시 목적상 본 사안에서는 시트세트에 중국산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캄보디아산” 표시는 19U.S.C.1304의 목적상 규정에 어긋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시트세트는 중국산임.</p>

<연번26> 베갯잇(Pillow shell)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29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7.31.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6307.90.9889	O	15% (2019.9.1.-)	6,005	3,290
사례명 Case	베갯잇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for a pillow shell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베갯잇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물은 대만에서 직조 및 염색을 거침 2. 직물은 롤의 형태로 중국으로 수입됨 3. 중국에서 수입된 직물을 베갯잇 형태로 자르고 봉제함 4. 미국에서 베갯잇을 채우고 마무리함 			
쟁점사항 Issues	베갯잇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직물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직물 또는 의료품의 원산지는 102.21조의 (c)(1)에서 (5)에 규정된 일반 규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결정됨</p> <p>-102.21의 (c)(1)에서 “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는 그러한 제품이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음</p> <p>-(c)(2)에서는 (c)(1)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산인 제품이 해당 품목에 결합되면서 품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기타 다른 요건사항을 충족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그러한 품목이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가 된다고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해당 품목은 6307.90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산지는 상품을 포함하는 직물이 “직물 제조공정”에 의해 형성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임.</p> <p>따라서 직물이 대만에서 직조되었기 때문에 대만이 원산지가 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베갯잇의 원산지는 대만임.			

<연번27> 물주머니 인조섬유베개(Fiberfill pillow with a water bladd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607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Trade Agreement; Country of Origin;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F85987			
2019.06.27.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404.90.1000	×	-	668	462	
9404.90.2000	×	-	1,825	1,210	
사례명 Case	캐나다산 물주머니로 채워진 인조섬유베개에 대한 원산지 및 표시, 품목분류, NAFTA 적용 가능성 The tariff classification,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pplicability,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 of fiberfill pillows with a water bladder from Canada.				
사실관계 Facts	A사는 완성된 제품인 베개와 중간재인 상품, 베갯잇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결을 요청함. 3개의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됨. #1006과 #1066은 HTSUS, 9404.90.1000에 분류되며 #1106은 HTSUS,9404.90.2000에 분류됨				
쟁점사항 Issues	물주머니로 채워진 인조섬유 베개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HTSUS, General Note(GN) 12(b)에 따르면 9409.90으로 분류되는 베개의 경우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비원산지재료는 HTSUS GN12(t)94.7에 규정된 품목변경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HTSUS 9404.90으로 분류되는 베개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된 비원산지재료는 chapter94로 분류되지 않으며 해당 호에서 배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HTSUS GN12(t) 84.7을 충족하여 NAFTA 특혜관세대우가 적용되어 9494.90.1000과 9404.90.2000에 분류되는 베개에 대한 관세는 없음</p>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는 102.21조의 (c)(1)에서 (5)에 규정된 일반 규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결정됨 -102.21의 (c)(1)에서 “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는 그러한 제품이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음 -(c)(2)에서는 (c)(1)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산인 제품이 해당 품목에 결합되면서 품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기타 다른 요건사항을 충족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그러한 품목이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가 된다고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개를 생산하기 위해 면직물과 폴리스터/면화직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원산지가 될 수 있지만 NAFTA 특혜 지역의 상품만이 NAFTA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NAFTA 특혜 우선(Preference Override)을 적용함</p> <p>§ 102.11(a) or (b) § 102.21에 따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는 단순 가공처리 이외의 생산을 거친 마지막 NAFTA 국가가 됨</p> <p>따라서 NAFTA 원산지증명이 서명되고 완성된 경우, 베개의 원산지는 “캐나다” 임</p> <p>표시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이에 따라 베개는 캐나다 상품으로서 표시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베개의 원산지는 캐나다임.</p>

<연번28> 누비 매트리스 패드(Quilted mattress pad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732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N019253 N240420 N276532		
	변경규칙 Modifies			
2019.07.11.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404.90.8040	X	-	14	165
9404.90.9505	X	-	234	53
9404.90.9522	X	-	1,389	338
사례명 Case	중국산 누비 매트리스 패드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quilted mattress pads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제품은 매트리스 패드로 관련 item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item1: Cuddle Duds 트윈 사이즈(39"x75") 매트리스 패드로 100%면, 인쇄되지 않은 상단 원단(top fabric) 그리고 100% 폴리에스터 하단 원단으로 됨. 폴리에스테르 70%, 리오셀 폴리에스테르 필 30%로 채우고 and hemmed with a 92% polyester폴리에스터 92%/스판텍스8%, 고무밴드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니트로 단을 만들 item2: 100% 인쇄되지 않은 상단 원단에 직조하지 않은 폴리에스터 뒷면이 있고, 솜털 및 깃털로 킨팅되었으며 폴리에스터 92%/스판텍스 니트직물의 탄성이 있는 단으로 처리된 매트리스 패드임 item3: 한 측면은 100%면이고 다른 측면은 100% 폴리에스터 Sherpa 양털로 뒤집어 사용할 수 있으며 폴리에스터 필로 킨팅하고 100% 폴리에스터와 고무밴드로 가장자리를 처리한 니트로 단을 마무리한 매트리스 패드임 <p>제조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에서 국내 및 전 세계에서 공수된 면화꾸러미를 실로 갖고 면화실을 미가공 직물로 직조하여 중국으로 수출함 중국에서 폴리스터 원사를 미가공 직물에 직조한 후 표백시키고 염색함. 이후 사이즈와 형태에 맞게 절단한 다음 안감과 스커트 감으로 만들 봉제, 킨팅 및 미국 수출용 포장작업이 이루어짐 			
쟁점사항 Issues	누비 매트리스 패드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국은 102.21조의 (c)(1)에서 (5)에 규정된 일반 규정의 순차적 적용에 따라 결정됨</p> <p>-102.21의 (c)(1)에서 직물 또는 의료제품의 원산지는 그러한 제품이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음</p> <p>- (c)(2)에서는 (c)(1)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산인 제품이 해당 품목에 결합</p>			

	<p>되면서 품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기타 다른 요건사항을 충족한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국은 그러한 품목이 생산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가 된다고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item 1은 인도에서 만든 직조물이며 따라서 인도가 원산지국임</p> <p>item 2는 인도에서 만든 직조물임. 하지만 여기서 19CFR 102.21(e)(2)(i)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마무리 작업(포백, 손질, 줄임 등)의 둘 이상이 동반될 때, 상품을 이루는 직조물이 염색되고 프린트된 국가, 영토 또는 섬의 영토가 원산지국이 됨.</p> <p>따라서, item 2와 같은 경우 인도산 직조물에 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처리는 앞서 언급한 마무리 작업의 2이상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e)(2)(i)이 적용되지 않음</p> <p>이러한 이유로 19CFR 102.21(e)(2)(ii)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직물제조과정”이 수행된 곳이 원산지국이 됨. 이에 따라 item2의 원산지국은 인도임</p> <p>item 3은 코튼 직물은 인도에서 만들었으며 폴리에스터 직물은 중국에서 만들. 이러한 경우 (c)(2)에 따르면 중요한 조립 또는 제조과정이 일어난 곳이 원산지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이에 따르면, item 3은 중요한 조립 또는 제조과정이 일어난 마지막 국가가 원산지국이 되므로 중국이 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item 1의 원산지국은 인도임.</p> <p>item 2의 원산지국은 인도임.</p> <p>item 3의 원산지국은 중국임.</p>

<연번29> 저수조 수화시스템(Reservoir hydration system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424	카테고리 Category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H173039		
2019.08.01.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3926.90.99	○	15% (2019.9.1.-)	118,969	56,379
사례명 Case	4개의 저수조 수화시스템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four reservoir hydration systems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두 개의 하위조립품인 튜브세트와 저장소로 구성된 수화시스템임</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자재는 대만과 중국에서 제조됨 2. 완성된 장치 및 포장을 위한 마지막 공정은 베트남에서 수행됨</p>			
쟁점사항 Issues	저수조 수화시스템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중국에서 생산된 저수조 구성품이 물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완료될 때 완성된 수화 시스템의 필수 특성을 가짐</p> <p>베트남에서 이어지는 단계는 저수조를 다른 새로운 상업품으로 변경하지 않는 단순 조립으로 여김 따라서 수화시스템의 원산지는 중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30> 신발(Footwea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35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7.15.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6404(추정)	O	15% (2019.9.1.-)	36,328	13,780
사례명 Case	신발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footwear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중국산 구성품으로 베트남에서 만든 완성된 신발에 대한 원산지에 관한 판결 요청을 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된 갑피 A와 B가 있음 2. 갑피A는 내부 부티양말(bootie sock)이 부착된 형태가 잡히지 않은 가죽 갑피이며 신발 바닥은 열린 상태임 3. 갑피 B는 바닥이 열린 동일한 형태의 갑피로 마무리, 주형 기타 방식으로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4. 신발부속품은 중국산이며 가죽갑피, booties, 중창 그리고 고무/플라스틱 밑창 역시 중국산임 5. 베트남에서 신발 부속품들로 완성된 신발을 제조함 <p>공정과정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중창/구두창과 결합한 갑피A를 포함 2. 베트남에서 조립된 각각의 중창과 밑창과 결합한 갑피A 3. 중국산 중창/구두창과 결합한 갑피B 4. 베트남에서 조립된 각각의 밑창과 밑창과 결합한 갑피B 			
쟁점사항 Issues	중국산 부속품으로 베트남에서 제조된 신발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과정은 중국산 부속품을 베트남산 제품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판단함</p>			

	<p>갑피의 형태를 잡고 마무리한 작업은 미완성된 갑피로부터 완성된 갑피로 형성하고, 일련의 중창과 밑창의 부착은 베트남으로 수입된 구성품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특성 및 용도를 갖춘 상업품이 되었다고 봄</p> <p>따라서 중국산 미완성갑피, 중창과 밑창으로 베트남에서 제조된 완성된 신발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신발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31> 줄자(Tape measur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427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2.07.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9017.80 (추정)	O	25% (2019.5.10.-)	2018년	2019년(6월)
사례명 Case	줄자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Tape Measure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중국에서 조립된 줄자의 원산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각 줄자의 구성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강 스프링과 철강을 입힌 줄자 2. 플라스틱 용기 3. 실패(bobbin), 고리 4. 벨트 클립과 같은 다른 여러 종류의 부품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산 미가공 강철과 강철이 입혀진 줄자를 한국으로 운송하여 특정 두께와 너비의 줄자와 스프링을 생산하기 위해 구멍을 내고 열처리를 함 2. 이후 눈금측정으로 프린트하고 페인트질 함. 프린트된 줄자와 스프링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송 3. 프린트된 줄자와 스프링을 중국산 플라스틱 용기, 실패, 고리 그리고 벨트 클립으로 조립함 4. 완성된 줄자는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됨 			
쟁점사항 Issues	줄자의 원산지국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 결정 관련 법률 19 CFR 134.1(b)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완성된 줄자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추가된 부품들은 강철이 입혀진 줄자의 본질적 기능을 변경시키지 않음</p> <p>따라서 중국에서의 조립과정으로 한국에서 프린트된 줄자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상품이 되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줄자의 원산지국은 한국임.			

<연번32> 손목시계(Wrist watch)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4105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60471 H243796 H047115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102 (추정)	O	15% (2019.9.1.-)	277	79
사례명 Case	수입산 시계에 대한 원산지; 301조의 무역구제 Country of origin of imported watches; Section 301 Trade Remedie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수입상품(Block 10_완전한 시계 형태)과 이와 별개로 다른 상품인 Block 27에 대한 구조적으로 분리된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p>A사는 원산지 결정요청에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와 배터리는 일본산이며 시계 케이스와 밴드는 중국산으로 이러한 구성품의 조립은 일본에서 이루어짐 2.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와 배터리는 일본산이며 시계 케이스와 밴드는 중국산으로 이러한 구성품의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3.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와 배터리는 일본산이며 시계 케이스와 밴드는 중국산으로 이러한 구성품의 조립은 태국에서 이루어짐 4.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는 기계식이며 말레이시아산임. 시계 케이스와 밴드는 중국산이며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쟁점사항 Issues	301조의 적용 목적상, 4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본, 중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산으로 이루어진 구성품으로 만들어진 시계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301조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변형분석이 적용될 수 있음</p> <p>참고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 d, 989 F.2d 1201 (Fed. Cir. 1993).</p> <p>CBP의 입장은 시계의 원산지는(끈 또는 밴드 제외)은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가 제조된 곳으로 보았으며 시계밴드는 시계 줄 또는 밴드는 시계를 제조한 국가와 다른 경우, 그 원산지는 개별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나리오 1에서는 CBP의 입장에 따라,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가 제조된 일본이 시계의 원산지이며 시계밴드 및 케이스 또한 시계에 조립되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일본이 원산지가 됨 ※참조사례: HQ 560471, dated January 5, 1997 2. 시나리오 2에서는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가 제조된 일본이 시계의 원산지이지만 시계밴드 및 케이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계 구성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3. 시나리오 3에서는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가 제조된 일본이 시계의 원산지이지만, 중국산 밴드와 케이스가 위 시계무브먼트(watch movement)와 태국에서 조립되었지만 구성품인 밴드와 케이스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산지는 중국임 4. 시나리오 4에서는 시계 무브먼트(watch movement)가 제조된 말레이시아가 원산지가 됨. 하지만 케이스와 밴드는 중국산임 <p>따라서 시나리오1에 대해서는 구성품이 중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301조에 따른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시나리오 2에 대해서는 중국산 케이스와 밴드에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301조가 적용됨 시나리오 3과 4에 대해서는 중국산 밴드와 케이스가 시계무브먼트와 조립된 국가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301조가 적용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시나리오 1, 2 그리고 3에 해당하는 시계의 원산지는 일본이며, 시나리오 4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말레이시아가 됨.</p>

<연번33> 컴퓨터 서버 캐비닛(Computer server cabine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338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Trade Agreement	
2019.03.20.	참조규칙 References	N302029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403.10.0040	O	25% (2019.5.10.-)	2,698	7,480	
사례명 Case	AFTA,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그리고 멕시코산 컴퓨터 서버 캐비닛에 대한 301장 무역구제의 적용 The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marking,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applicability of Section 301 trade remedies of a computer server cabinet from Mexico. Correction to Ruling Number N302029.				
사실관계 Facts	<p>※멕시코산 컴퓨터 서버 캐비닛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그리고 301조 무역 구제 조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결정 요청에 대한 판결을 정정함.</p> <p>-N302029에서 <u>301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체함</u></p> <p>A사는 컴퓨터 서버 캐비닛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캐비닛이 제조되는 2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p> <p>시나리오 1:6개의 수직 기둥, 베이스 하위조립품 그리고 상위 조립품은 중국산임. 이러한 부품을 멕시코에서 주 컴퓨터 서버 프레임에 제조하기 위해 용접함. 멕시코에서 프레임과 용접 부분을 추가 연마, 세척, 페인트칠, 검수 및 중국산 패널, 캐스터, 패치 패널, 클립, 버스바 그리고 브래킷을 추가 조립함</p> <p>시나리오 2:베이스 조립품과 상위 조립품은 중국산인 반면, 6개의 수직 기둥은 멕시코산임. 멕시코에서 중국산 패널, 캐스터, 패치 패널, 클립 버스바 그리고 브래킷을 추가 조립함.</p> <p>용접, 조립, 연마, 도장, 세척 및 검수 등 역시 멕시코에서 수행함</p>				
쟁점사항 Issues	컴퓨터 서버 캐비닛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제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NAFTA 협정국의 상품은 NAFTA 표시규칙(19 CFR 102에 명시)이 원산지를 결정함</p> <p>-19 CFR 102.11(a)(3)은:</p>				

	<p>섬유 및 의류품 <u>이외의</u> 수입품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각 외국산 재료는 102.20장에 규정된 품목분류에서 적용되는 변경을 거치며 본장의 기타 다른 적용되는 요건사항을 충족함</p> <p>Part 102.20은 9403.10 - 9403.89까지의 상품이 멕시코산이 되기 위해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어야 함. 그러한 실질적인 변형은 (GRD)2(a)에 의한 경우 9401.10에서 9403.89를 제외하고 그 그룹 외의 다른 소호로부터 9403.10에서 9403.89로 변경되어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u>무역 협정 - NAFTA (시나리오1과 2)</u> HTSUS, General Note 12(b)는 상품이 NAFTA에 기인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원산지가 되기 위해 재료구성성분은 HTSUS, GN12(b)(ii)(A)(t)에 따라 멕시코 영역에서 변형이 되어야 함.</p> <p>94절 규칙 4, (A) 기타 다른 절에서 소호 9403.10에서 9403.89까지의 변경; 또는 (B) 소호 9403.90으로부터 9403.10에서 9403.89에 해당하는 소호로의 변경, 기타 다른 절로부터 변경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지역적 가치 요소가 있는 경우: (1) 관세평가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이 사용된 지역이 60% 차지 (2) 순원가법이 사용된 지역이 50% 차지</p> <p>두 시나리오에서 중국과 멕시코산 구성품은 SectionXX(여러 제조상품)외로 분류 가능하며 제조의 결과로서 멕시코에서 품명변경이 일어나므로 캐비닛은 NA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음</p> <p>캐비닛은 HTSUS, 9903.88.03(9403.10.00 포함)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301장 무역구제의 적용대상이 아님</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301장 무역구제의 영향을 받지 않음.

<연번34> 서랍장(Drawer box)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029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Trade Agreement; Country of Origin; Marking	
2019.05.14.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403.90.7080	O	25% (2019.5.10.-)	477	109	
사례명 Case	캐나다산 서랍장에 대한 품목분류, NAFTA, 원산지, 표시 및 301조의 적용 여부 The tariff classification,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applicability of Section 301 trade remedies of drawer boxes from Canad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A사 상품인 나무서랍장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그리고 NAFTA 적용 및 Section 301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함.</p> <p>제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목재 서랍장인 Tumac 상품은 자외선 (UV) 마감, 포플러 목재, 다양한 크기의 서랍장칸임. 폭은 2" ~ 4" , 깊이 1.5" , 길이 32" 입니다. 앞면의 너비는 2 ~ 4" , 깊이 1.5" , 길이 18"입니다. 뒷면의 너비는 2 ~ 4" , 깊이 1.5" , 길이 18"임. 받침대의 너비는 2" ~ 4" , 깊이 1/4" 및 18" 임</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상품의 원자재 구성품(나무판자)은 통나무를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에 흠을 파고, 자외선차단처리를 한 후, 캐나다로 운송함 2. 캐나다에서 절단부분을 오른쪽, 왼쪽 및 후면 서랍 측면으로 열장이음, 샌딩 (sanding), 서랍장 베이스와 서랍측면 조립, 검사, 라벨링 및 수출포장을 함 <p>해당 품목번호는 9403.90.7080임.</p>				
쟁점사항 Issues	캐나다산 서랍장에 대한 품목분류, NAFTA상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있는지의 여부 혹은 301조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와 최종적으로 원산지는 어디이며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NAFTA상의 특혜관세대우를 받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됨.</p> <p>무역협정 - NAFTA</p> <p>General Note(GN)12(b)에 따르면 NAFTA에 따른 원산지가 되려면 캐나다의 영역 내에서 GN 12 (b) (ii) (A) (t), HTSUS에 명시된 규칙을 충족해야함</p> <p>Chapter 94, Rule 5: "기타 다른 호에서 소호 9403.90으로 변경"</p> <p>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산 재료는 Section XX (기타제조제품)로 분류될 수 있으며, 품목변경은 공정의 결과로 캐나다에서 발생함. 따라서 나무서랍장은 NAFTA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p>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NAFTA 협정국의 상품의 경우 원산지를 결정할 시, NAFTA 표시규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나무서랍장이 일부 캐나다에서 제조되었기 때문에 NAFTA 원산지표시 규칙이 원산지를 결정함</p> <p>Part 102.20에 따르면 9403.90호에 분류되는 상품이 캐나다산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서 9403.90의 소호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9401.90의 소호제외)</p> <p>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품목변경이 나무서랍장이 되면서 품목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산지는 캐나다가 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나무서랍장의 원산지는 캐나다산이며 표시는 캐나다산으로 표시함.</p>

<연번35> LED 라텍스 풍선(LED latex balloon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763	카테고리 Category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N173614		
2019.09.11.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503.00.0013 (추정)	O	15% (2019.9.1.-)	12	31
사례명 Case	중국에서 조립된 LED 라텍스 풍선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LED Latex Balloons assembled in Chin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LED 라텍스 풍선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3개의 형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대형 외계인 라이트 업 풍선(Supersize Alien Light Up Balloons) 2. 대리석 라이트 업 풍선(Marble Light Up Balloons) 3. 일반 라이트 업 풍선(regular Light Up Balloons) <p>-이들 품목은 라텍스 풍선과 LED 조명으로 구성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첫 번째 제품의 라텍스 풍선 구성품은 이탈리아에서 공급되었으며 LED 부품은 중국에서 공급됨 2. 두 번째 제품의 라텍스 풍선 구성품은 대만에서 공급되었으며 LED 구성품은 중국에서 공급됨 3. 세 번째 제품의 라텍스 풍선 구성품은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되었으며 LED 구성품은 중국에서 공급됨 <p>*LED 풍선을 미국으로 수입 전, 중국에 있는 회사의 계열사 중 한 곳에서 간단한 조립작업을 수행함(조립작업은 숙련도가 낮은 작업자가 몇 초 만에 완료하는 단순한 작업임)</p>			
쟁점사항 Issues	LED 라텍스 풍선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제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p>			

	<p>라텍스 풍선은 중국으로 수출 전에 이탈리아, 대만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식별 가능한 모양으로 형성됨</p> <p>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단순 조립과정과 LED 라이트 하우징 장치를 추가하기 전에 이미 그 최종 형태와 용도가 결정된 상태였고 가공 전후 동일 품명을 가지고 있었음</p> <p>LED 라이트 하우징 장치조립작업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산 라텍스 풍선에 중국산 구성품의 결합은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p> <p>따라서 해당 LED 라이트 업 풍선의 원산지는 라텍스 풍선이 공급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 결정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첫 번째 상품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임.</p> <p>두 번째 상품의 원산지는 대만임.</p> <p>세 번째 상품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p>

<연번36> 골프클럽(Golf club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76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60803 N306219 H301619		
	변경규칙 Modifies			
2019.09.12.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506.31.0000	O	15% (2019.9.1.-)	67	14
사례명 Case	베트남 또는 멕시코에서 조립된 골프클럽의 원산지 및 301조의 적용가능성 The Country of Origin of Golf Clubs assembled in Vietnam or Mexico and the Applicability of Section 301 Trade Remedie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골프클럽에 대한 원산지와 301조의 적용에 관한 판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pic Flash Series” golf clubs으로 골프클럽헤드, 손잡이 그리고 그립으로 이루어짐</p> <p>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고 N306219에 따라 고려중임(자료 없음) 2. 두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만에서 골프클럽헤드가 완전히 제조됨(중국에서 단순처리 포함). 손잡이는 베트남산이며 그립은 중국산임 -골프클럽 부품들을 기능성 골프클럽으로의 조립은 베트남에서 여러 작업을 통해 수행됨 3. 세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골프클럽 헤드를 대만에서 완전히 제조함(중국에서 단순처리 포함). 손잡이는 멕시코산이며 그립은 중국산임 -골프클럽 부품들을 기능성 골프클럽으로의 조립은 멕시코에서 수행됨 			
쟁점사항 Issues	골프클럽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제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p>			

	<p>골프클럽에 대한 조립이 멕시코에서 수행된 경우의 시나리오는 19C.F.R.Part 102에서의 NAFTA 표시규칙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변형시험이 301조의 적용 목적상 원산지를 결정함</p> <p>시나리오 2의 경우, 골프클럽헤드, 그립 그리고 손잡이의 추가 등, 골프클럽 부품들을 기능성 골프클럽으로 조립한 공정과정은 그러한 공정이 이루어진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룸</p> <p>시나리오 3의 경우, 골프클럽헤드, 그립 그리고 손잡이의 추가 등, 골프클럽 부품들을 기능성 골프클럽으로 조립한 공정과정은 그러한 공정이 이루어진 멕시코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룸</p> <p>따라서 시나리오 2의 경우, 골프클럽의 원산지는 베트남이며 시나리오 3의 경우, 멕시코가 됨</p> <p>이에 따라 301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시나리오 2의 경우 원산지는 베트남임. 시나리오 3의 경우 원산지는 멕시코임.</p>

<연번37> 미완성된 단조파이프배관(Unfinished forged pipe fitting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29954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8.08.30.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7307.99 (추정)	O	25% (2019.5.10.-)	42,363	24,583
사례명 Case	미완성 단조파이프 배관(T자)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unfinished forged pipe fittings(T자, tees)			
사실관계 Facts	<p>A사의 미완성된 탄소강 단조파이프 배관(T자, tees)의 원산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에서 단조파이프배관블랭크를 제조, 열처리를 한 후 검수 2. 중국으로 운송하여 단조파이프배관블랭크 끝부분에 구멍을 뚫음. 구멍을 뚫은 T자 블랭크는 Industrial Products International사가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수입됨 3. 미국 소비자는 스레딩(threading) 또는 소켓 용접을 통해 배관을 완성함 			
쟁점사항 Issues	미완성된 단조파이프배관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참조판례: Anheuser-Busch Brewing Association v. United States, 207 US 556, 28 S Ct204 (1908)]</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한국산 T자 블랭크의 폐쇄된 끝을 중국에서 구멍을 뚫는 가공처리는 실질적인 변형을 구성하지 않음</p> <p>블랭크 끝이 폐쇄된 미완성 배관상태로 중국으로 운송되었고 구멍을 뚫는 가공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배관 상태였고 따라서 드릴 작업만으로 다른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없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미완성된 단조파이프배관의 원산지는 한국임.			

<연번38> 스테인레스강 싱크대(Stainless steel sink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77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7.01.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7324.10 (추정)	O	25% (2019.5.10.-)	4,518	919
사례명 Case	스테인레스강 싱크대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stainless steel sink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스테인레스강 싱크대의 원산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스테인레스강 싱크대에 대한 가공처리는 중국에서 우선 첫 번째 deep-draw작업이 싱크대의 볼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짐 2. 이후 싱크대 블랭크(blanks)를 베트남으로 운송함 3. 베트남에서 두 번째 deep-draw작업이 모든 면적에 충분한 두께를 주기 위해 이루어짐(단일 deep-draw처리는 원하는 구조의 형성을 가진 싱크대를 만들어 내지 못함) 4. 배출 구멍을 press로 절단하고 외면은 레이저로 절단함 5. 싱크대의 테두리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graining 과정을 거침 6. 모서리의 용접, 최종마무리로서 흠집을 제거하기 위한 연마, 내부 싱크 및 용접된 코너의 전체 모양을 개선하기 위한 비드 블라스팅(bead blasting), 세척함 <p>※싱크대를 생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짐</p>			
쟁점사항 Issues	스테인레스강 싱크대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싱크대 블랭크에 대한 추가 작업은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지 않음</p> <p>7324호로 미완성 싱크대로 베트남으로 운송된 블랭크는 7324호로 완성된 싱크대로 다시 운송됨</p> <p>따라서 추가 가공처리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되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스테인레스강 싱크대의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39> 알루미늄 빌렛(Aluminum bille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1439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참조규칙 References			
2018.11.21.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7601.20.9045	O	15% (2019.9.1.-)	2,157	16,781
9903.85.01	X	10%	-	-
사례명 Case	한국산 알루미늄 빌렛의 품목분류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luminum Billets from South Kore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알루미늄 빌렛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알루미늄 빌렛은 6인치와 11인치 사이의 다양한 폭을 가짐. 2. 제공된 정보에 따라, 빌렛은 알루미늄 합금임 <p>알루미늄 빌렛에 적용 가능한 소호는 7601.20.9045임</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산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을 한국으로 운송하여 호주산 비합금 알루미늄 주괴와 용융 및 혼합시켜 빌렛을 만들어냄 			
쟁점사항 Issues	호주산 비합금 알루미늄 주괴와 미국산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의 용융 및 혼합이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왔는지의 여부 그리고 표시규칙 상,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호주산 비합금 알루미늄 주괴와 미국산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의 용융과 혼합이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왔는지의 여부에 대해 빌렛이 미국산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수행된 공정처리가 한국으로 수입된 상품과 다른 또는 이외의 상품이 아니라는 <u>증거를 보여함</u></p> <p>따라서 호주산 비합금 알루미늄 주괴와 미국산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의 혼합은 빌렛이 한국산이라는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왔다고 봄</p> <p>더불어, 관세규정 134.33에 규정된 J-list로 알려진 특정 상품군은 19 USC 1304(a)(3)(J)에 따라 개별 원산지표시에서 면제됨.</p> <p>이 규정의 하나의 예외로서 빌렛을 포함한 금속이 포함되며, 따라서 합금은 한국산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음</p> <p>※19 CFR 134.33에 따르면 만일 J-list 상에 포함된 상품이 컨테이너일 경우, 최종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물의 원산지를 컨테이너 가장 바깥쪽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p> <p>※수량제한 또는 쿼터는 특정 예외국가에 적용될 수 있으며 99절에서 확인할 수 있음. 철강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와 알루미늄에 대한 10%의 추가관세는 99절 소호 9903.80.01과 9903.85.01에 각각 반영되어 있음.</p> <p>7601.20.9045로 분류되는 상품은 추가 관세 또는 쿼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수입 시, 99절뿐만 아니라 72, 73 또는 76절에 분류되는 상품에 대해 보고해야 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알루미늄 합금의 원산지는 한국임.

<연번40> 리어엔진 마운트(Rear engine moun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82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N302657 N302652 N300207 H301619			
2019.07.16.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302.30.3060 (중국산원재료, 완제품)	O	25% (2019.5.10.-)	161,462	87,452	
사례명 Case	리어엔진 마운트에 대한 301조의 적용 및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01 remedies of a rear engine mount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리어엔진마운트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주조, 가공 및 전자 코팅 된 중앙 핀 1 개 2. 멕시코에서 제조된 하나의 고무 절연체 주형 3. 중국 또는 미국에서 만든 하나의 알루미늄 하우징 <p>공정과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리어엔진 마운트는 멕시코에서 조립됨. 중국산 casting에 접착제로 코팅하고 멕시코산 rubber isolator를 핀에 부착시킴. 중국산 또는 미국산 알루미늄 하우징을 rubber isolator에 포함시킨 접합철선에 구부림 <p>품목분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멕시코에서 조립된 리어엔진 마운트는 수입된 부품으로 만들어짐. 그중 중국산 중앙 핀은 HTSUS, 8302.30.3060으로 분류됨. 2. 중앙 핀 주조가 8302.30.3060의 마운트로 멕시코로 수입되었고 완전한 리어엔진 마운트는 8302.30.3060 마운트로서 수출됨 -CBP의 판단에 따르면, 중앙 핀은 리어엔진 마운트의 필수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재료로 봄. 따라서 리어엔진 마운트의 품목번호는 8302.30.3060임 				
쟁점사항 Issues	리어엔진 마운트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과 관련한 법률의 해석은 다음과 같음. -19CFR 102에 포함된 NAFTA 표시규칙이 표시목적상, 원산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시험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함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리어엔진 마운트는 멕시코에서 제조되었으며 중국과 미국산 부품을 이용함. 그 중 리어엔진 마운트에 필수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을 중앙 핀으로 보았고 품목번호는 8302.30.3060으로 분류함</p> <p>완성된 리어엔진 마운트의 품목번호는 수출 시, 변경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멕시코의 고무 몰딩 및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한 중앙 핀 구조물의 조립은 실질적인 변형을 구성하지 않으며 추가 가공처리는 다른 새로운 상품이 되지 않음</p> <p>따라서 중앙 핀 구조물은 중국산이며 이에 따라 301의 조치가 적용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리어엔진 마운트의 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41> 인테리어 비잠금 도어 자물쇠 세트(Interior Non-locking door latch se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56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735009		
2019.08.26.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302.41.6045	○	25% (2019.5.10.-)	3,705	2,114
사례명 Case	금속 인테리어 비잠금 도어 자물쇠 세트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metal interior non-locking door latch set			
사실관계 Facts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인테리어 비잠금 도어 자물쇠 세트(Item # 2114-109)로 자물쇠 조립품, 받이판, 외 부손잡이 부품 그리고 내부 손잡이 부품으로 구성됨</p>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만에서 내·외부 문손잡이, 받이판 그리고 자물쇠부품을 공급함 2. 대만산 부품을 중국으로 운송하여 중국산 연동기, 로즈나사기둥, 회전심봉, 잠금 그리고 스프링 케이지 조립품, 잠금 탭, 잠금 탭 드라이버를 조립하여 인테리어 비잠금 도어자물쇠 세트를 제조함 3. 내·외부 문손잡이 부품, 자물쇠 부품 그리고 나사는 인테리어 비잠금 도어 자 물쇠 세트에 포장되어 판매될 예정 			
쟁점사항 Issues	비잠금 도어 자물쇠 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대만산 도어손잡이와 자물쇠부품은 도어자물쇠세트의 본질적인 작동 요소를 제공함</p> <p>이러한 아이템에 중국산 구성품의 추가나 중국에서 수행된 단순한 가공작업으로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대만임.			

<연번42> 의류더블고리(Garment hook, doubl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630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735009		
2019.08.29.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308.10 (추정)	O	25% (2019.5.10.-)	2,309	1,228
사례명 Case	황동의류 고리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brass garment hook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01-3012-418로서, 황동의류 더블 고리(brass Garment Hook, Double)임</p>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만에서 주물을 통한 고리를 생산함 2. 중국에서 주물 고리에 대해 연마, 주형라인 및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세척, 보호층을 씌우고 건조화시킨 코팅 고리를 포함한 일련의 가공처리가 수행됨 3. 완성된 의복 고리는 중국산 잠금장치로 중국에서 포장함 			
쟁점사항 Issues	의류더블 고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고리의 주물은 의류 고리의 본질을 이룸</p> <p>고리는 중국산 부품의 추가나 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처리 혹은 포장작업으로 실질적인 변형의 영향을 받지 않음</p> <p>따라서 대만산 주물고리는 의류 고리가 기능하기 위한 본질적 작업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산지는 대만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대만임.			

<연번43> 로커 암(Rocker arm)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73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6.25.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201.50.00	O	25% (2019.5.10.-)	-	-
사례명 Case	로커 암의 원산지국 The country of origin of a rocker arm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로커 암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p>제품설명과 운송과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1.대상 품목은 로커 암으로 포핏밸브(poppet valve)에서 열고 잠그기 위해 캠에서의 방사성 움직임을 직선 움직임으로 변환시키는 진동레버임</p> <p>2.중국산인 로커 암에 대한 추가가공을 위해 한국으로 운송되어 후에 미국으로 수입됨</p>			
쟁점사항 Issues	로커 암의 원산지국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한국에서의 가공처리, 게이트 제거, 폭/볼시트(ball seat)/pallet 압인가공, 모접기, 열처리, 레이저 표시 등을 거치지만 로커 암의 본질은 동일함</p> <p>중국에서 배송되는 상품은 로커 암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기능추가를 위한 가공 처리를 거쳤다고 하여도 로커 암으로만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임</p> <p>따라서 로커 암은 한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 시, 원산지 및 표시 목적상 중국산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로커 암은 중국산임.			

<연번44> 펜치(Plie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6045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9.23.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8203.20.60 (추정)	O	25% (2019.5.10.-)	2018년 36	2019년(6월) 8
사례명 Case	펜치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pliers			
사실관계 Facts	A사는 펜치에 관한 원산지판정을 요청함. 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사개 물림 펜치(tongue-and-groove plier)와 롱 노즈 잠금 펜치(long nose locking plier)임 공정과정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1. 시나리오1에 따르면 흠으로 맞물리는 접합 펜치에 대한 가공과정으로 베트남에서, 원강철을 다이 컷하여 상·하단 핸들과 jaw blanks를 제조하기 위해 버림. 거칠게 다듬은 후, 중국으로 운송함 -중국에서 핸들 블랭크를 추가로 가공하여 상단 핸들에 채널 슬롯을 추가하고 양 jaw를 같음 2. 시나리오2에서 흠 조인트 펜치의 처리 단계로 베트남에서 원강철을 다이컷 하여 상·하단 핸들과 jaw blanks를 제조하기 위한 버림 -슬롯 채널은 상단 핸들로 다이 컷팅됨 -지주 구멍을 하단 손잡이로 컷팅하여 사개(tongue)를 형성함 -펜치의 모양을 갖추는 일련의 가공과정이 이루어짐 -베트남에서 핸들에 추가 열처리와 연마한 다음 핀 리벳을 사용하여 조립함 -레이저로 로고를 새기고 손잡이에 플라스틱 덮개가 추가됨 3. 시나리오3에서 롱 노즈 잠금 펜치에 대한 가공과정으로 베트남에서 강철 막대를 펜치의 상·하단 jaw를 만들기 위해 다이컷 한 다음 연마함 -베트남에서 두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강철판을 자르고 각인함 -중국에서 토글과 레버에 강철을 찍고 열처리, 연마, 니켈 도금, 리벳, 스프링, 조절 볼트 및 2개의 플라스틱 핸들 커버와 함께 조립됨			
쟁점사항 Issues	펜치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제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펜치의 핸들과 jaw는 완성된 펜치에 본질을 부여함</p> <p>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및 가공작업은, 즉 손잡이와 jaw는 남은 구성품의 추가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p> <p>더욱이 핸들과 jaw를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시킬 만큼 제조과정 또한 복잡하지 않음</p> <p>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설명된 펜치의 원산지는 베트남이 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45> 조정 가능한 스패너(Adjustable wrench)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6211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9.23.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204.12 (추정)	○	25% (2019.5.10.-)	25	42
사례명 Case	조정 가능한 스패너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n adjustable wrench.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조정 가능한 스패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트남에서 가공되지 않은 강철 막대를 드롭 단조하여 성형하고 주조하여 두 가지 주요 스패너가 제조됨 2. 이후 여러 과정의 제조과정을 거친 부품들을 중국으로 운송함 3. 중국에서 운송된 부품들에 대해 열처리, 연마, 크롬 도금 및 너트 크기를 표시함. 여기에 중국산 웜 마디(worm knurl), 핀 그리고 스프링과 함께 조립됨 <p>※중국산 플라스틱 편의 핸들 커버는 소매 포장 전에 추가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음</p>			
쟁점사항 Issues	스패너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스패너 핸들/고정 jaw 그리고 조정 가능한 jaw는 완성된 스패너에 본질적 요소를 부여함</p> <p>중국에서 수행된 작업은 남은 구성품의 추가로 실질적으로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또한 핸들/고정jaw 그리고 조정 가능한 jaw를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시킬 만큼 조립과정이 복잡하지도 않음. 따라서 조정 가능한 스패너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베트남임.			

<연번46> 리니어 액추에이터(Linear actuato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467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8.08.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412.31 (추정)	O	25% (2018.7.6.-)	789	609
사례명 Case	리니어 액추에이터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linear actuators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품목은 TA9 시리즈 액추에이터로 리클라이너, 러브시트, 그리고 소파와 같은 모션커버로 주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제작됨 2. 액추에이터의 기능은 가구의 리클라이닝 및 기타 모션을 기계화하는 것임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주요 부품/하위조립품은 스피들 조립품, 워기어, 하우징, 리미트 스위치, 전기 DC 모터, 전기 케이블, 절연체, 내부 및 외부 튜브, 모터 브레이크 조립품 및 다양한 하드웨어 및 개스킷</p>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p> <p>대만과 중국산 부품을 대만에서 조립하여 액추에이터를 생산함</p>			
쟁점사항 Issues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하위 구성품으로 가공된 개별 부품을 가지고 이루어진 조립과정은 21번의 조립 단계를 거쳐 대만에서 수행됨</p> <p>기능성 모터 액추에이터로의 최종공정은 중요하며 전기모터뿐만 아니라 구성품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것임</p> <p>공정과정은 개별 부품을 새로운 기능과 목적을 가진 다른 새로운 품목으로 변형시켰다고 봄</p> <p>따라서 대만에서의 공정은 개별 부품의 모터 액추에이터 생산에 사용한 부품으로부터 구별되는 다른 새로운 품목, 특성 그리고 용도를 지닌 상업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리니어 액추에이터의 원산지는 대만임.</p>

<연번47> 지게 (Forklift)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755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H016418		
2019.04.05.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427.10.40 (추정)	O	25% (2018.7.6.-)	322,208	187,865
9802.00.80				
사례명 Case	중국산 포크리프트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forklift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포크리프트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산 엔진을 포크리프트 트럭에 추가로 조립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산 부품과 엔진을 조립함 2. 포크리프트를 이루는 구성품은 운전석, 안테나 기둥, 등받이, 포크, 헤드가드, 타이어, 카운터웨이트, 틸티 실린더, 변속기 및 조종차축(steer axles)으로 되어 있음 3. 이러한 각 구성품은 단순한 조립부품임. 일단 조립이 완성되면 완성된 포크리프트트럭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함 			
쟁점사항 Issues	포크리프트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엔진과 같은 포크리프트의 구성품은 개별적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국 결정과 품목 분류를 위해 각각에 대해 고려됨.</p> <p>사례 HQ H01641를 살펴보면 수입된 상품에 대한 분류 규칙을 알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의 선체 바깥의 모터보트는 이미 엔진이 탑재된 상태로 수입됨(즉, 기계적으로나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트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상태) -GRI 1에 따라 모터보트의 건설에 투입되는 기타 수백 개의 구성품과 같은 엔진은 그러한 구성품의 합으로써 모터보터와 함께 분류됨 <p>※GRI 1: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기타 관련 section 또는 chapter notes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찬가지로, 차량 엔진은 수입 시에 부착된 차량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음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포크리프트 원산지국은 그 부품의 합에 의해 결정됨</p> <p><u>미국산 엔진은 포크리프트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음</u></p> <p>포크리프트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열거된 비슷한 다양한 구성품과 함께 동등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음</p>			

	<p>따라서 열거된 구성품들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미국산 엔진은 포크리프트에 본질적 특성을 가지지 않고 다른 구성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짐으로써 중국에서의 공정으로 새로운 상업품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포크리프트의 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48> 정비공 수공구 세트 및 공구(Mechanics handtool sets and tool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1954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Marking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2.14.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8466.10.0175	○
사례명 Case	여러 국가의 정비공 수공구 세트 및 공구에 대한 품목분류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Mechanics Handtool Sets and Tools from Multiple Countries			
사실관계 Facts	<p>해당사례는 Husky 134개의 정비공 수공구 세트(Part No. H134MTS)에 대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에 대한 요청임.</p> <p>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Husky 55개 정비공 수공구 세트(Part No. HPT55MTS)는 2개의 래치, 12개의 비트, 36개의 소켓, 2개의 익스텐션 바 그리고 3개의 어답터로 구성됨 Husky 134개 정비공 수공구 세트(Part No.H134MTS)는 3의 래치, 2개의 익스텐션 바, 82개의 소켓, 10개의 콤비네이션 렌치, 1개의 비트 드라이버, 22개의 비트 그리고 14개의 Allen 렌치로 구성됨 <p>제품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Husky 55개 정비공 수공구 세트 대만산 래치, 익스텐션, 어답터 중국산 소켓, 비트, 플라스틱 공구 케이스 Husky 134개 정비공 수공구 세트 대만산 래치, 비트 드라이버, 익스텐션 중국산 소켓, 비트, 콤비네이션 렌치, Allen 렌치, 플라스틱 공구 케이스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스키 L8 래치(Ratche)는 래치의 대강의 형태를 생산하기 위해 <u>대만</u>에서 열주조(hot forging) 처리를 가함 주조된 래치는 <u>중국</u>으로 수출되어 기계처리, 열처리, 클리닝/연마, 도금, 조립 및 포장을 거침 38EL 익스텐션과 허스키 마그네틱 비트 드라이버는 익스텐션과 비트 드라이버의 대강의 형태를 생산하기 위해 <u>대만</u>에서 냉 주조를 함 두 개의 주조상품은 <u>중국</u>으로 수출되어 기계처리, 열처리, 표면 처리, 조립 및 포장을 함 비트 드라이버와 관련하여 두 번의 추가 공정이 수행되는데 예로서 손잡이와 조립품(드라이버와 handle press를 함께)을 끼워 넣는 등의 작업임 			

<p>쟁점사항 Issues</p>	<p>래치(ratchet), 익스텐션(extensions) 그리고 비트 드라이버(bite drivers)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p>
<p>법과해석 Law And Analysis</p>	<p>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일반해석규칙(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GRI)에 따라 일단 두 개 이상의 호로 분류 가능한 상품은 GRI 3에 따라 분류 가능함</p> <p>GRI 3(c)에 따라 Husky 55개 정비공 수공구 세트(Part No. HPT55MTS)와 Husky 134개 정비공 수공구 세트 그리고 개별 래치, 익스텐션 및 비트 드라이버에 적용되는 소호는 HTSUS 8466.10.0175임</p> <p>※GRI 3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품이 2개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분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p> <p>(a) 가장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호는 보다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호보다 우선시 됨. 그러나 두 개 이상의 호가 각각 혼합물질에 포함된 물질의 일부만을 가리키거나 혹은 소매용 세트의 일부만을 가리키는 경우 그러한 호는 동등하게 특정되어 있다고 간주됨.</p> <p>(b) 다른 물질로 구성되거나 다른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혼합물, 복합재 그리고 3(a)를 참조하여 분류할 수 없는 소매용 세트로 된 상품은 물질 또는 구성품이 상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분류됨</p> <p>(c) 상품이 3(a) 또는 3(b)를 참조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 동등하게 고려할만한 것 중, 번호순서에서 마지막 호에 따라 분류해야 함</p> <p>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과정에서 혹은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품목, 특성 그리고 용도)이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함. 참고사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대만산 래치, 익스텐션 그리고 비트 드라이버는 외관상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구조되었으며 용도 또한 미리 갖춰짐 이러한 부품의 품명은 중국에서의 가공 후에도 동일한 품명을 가지고 있다고 봄</p> <p>하지만, 전체 세트가 HTSUS 규정상 무역구제 301조의 대상은 아니지만 세트 구성품의 일부가 301조의 목록에 속할 경우, 무역구제 301조 관세는 개별 구성품에 적용되지 아니함.</p>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p>3. 영구적인 방법으로</p> <p>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p> <p>이에 따라 본 사안의 표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Husky 55와 Husky 134는 플라스틱 공구 케이스에 담겨도 그 본질을 잃지 않으므로 세트의 포장 바깥쪽에 “대만과 중국 제품을 중국에서 포장” 이라고 표시하며,</p> <p>개별 포장된 래치, 익스텐션 그리고 비트 드라이버는 “대만에서 제조, 중국에서 포장” 이라고 표시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대만임.</p>

<연번49> 열에너지회복 인공호흡기 및 제어기 액세서리(Lifebreath heat and energy recovery ventilators, Control accessori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278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2019.05.03.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479.89.6500	O	15% (2019.9.1.-)	2,436	378
사례명 Case	캐나다산 열에너지회복 인공호흡기 및 중국산 제어기 액세서리에 대한 품목분류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Lifebreath Heat and Energy Recovery Ventilators from Canada and Control Accessories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열에너지회복 인공호흡기 및 중국산 제어기에 액세서리(기계식 환기 시스템)에 대한 원산지국 결정을 요청함.</p> <p>제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RV(lifebreath heat recovery ventilators) 및 ERV(lifebreath energy recovery ventilator)는 두 개의 별도의 공기 경로를 제공하여 균형 잡힌 환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u>기계적 환기 시스템</u>으로 단일 패키지 솔루션에 배기 시스템과 공급 시스템을 결합한 것임 2. HRV 및 ERV에는 압축기, 가열 또는 냉각 소자를 포함하지 않음 3. HRV 또는 ERV에 있는 작은 전기회로보드와 벽면제어로 제어됨 4. 제어기를 통해 HRV 및 ERV의 팬의 속도 변화를 변경함 5. 전원은 120볼트용 표준전기코드를 통해 제공되며 HRV 및 ERV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나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제어장치기(controls)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 대기 설정, 전자 제습기 및 작동 모드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어 모델이 있음. 제어 모델 번호는 BC02, BC03, BC04 및 Lifebreath 로고 없이 제공되는 일반 모델 GBC02, GBC03, GBC04, DXLP02 및 DXPL02 (DXLP02의 일반 모델)로 구성됨. Lifebreath Digital Control 99-DXPL02 (DXLP02의 일반 모델), Lifebreath 환기 컨트롤 99-BC02 및 Lifebreath 환기 컨트롤 99-BC03은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제습기로 작동하는 제어기로 설명됨 <p>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내용은 다음과 같음.</p> <p>시나리오 1은 HRV 또는 ERV를 별도로 포장, 시나리오 2는 HRV 또는 ERV를 제어기, 타이머 그리고 리피터(repeater)와 함께 포장</p>			

<p>쟁점사항 Issues</p>	<p>1. 시나리오 1. HRV 또는 ERV 별도로 대한 분류했을 때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시나리오 2. 제어기, 타이머 그리고 리피터(repeaters)와 함께 구성된 HRV 또는 ERV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3. HRV 또는 ERV 세트는 HTSUS 규정에 따라 전체 세트로서 분류되어 301조의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p>
<p>법과해석 Law And Analysis</p>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HTSUS, 일반해석규칙에 따르면 분류는 호의 용어와 관련 장 또는 절의 note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함 -<u>일단 상품이 두 개 이상의 호로 분류 가능한 경우 GRI 3, HTSUS에 따라 분류함</u> :GRI 3(a)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각 두 개 이상의 호가 소매용 판매로 설정된 상품의 일부만을 가리킬 때, 비록 하나의 호가 상품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호는 동등한 것으로 여김</p> <p><u>시나리오 2에서 다른 소호로 분류 가능한 두 개의 다른 상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됨.</u></p> <p>이러한 상품은 특정 활동(균형 잡힌 환기 제공)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묶인 상품으로 구성되었고, 재포장 없이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됨 따라서 문제의 상품은 “<u>소매용 세트상품</u>”이라는 용어로 해석됨</p> <p><u>GRI 3(b)는 부분적으로 3(a)를 참조하여 분류할 수 없는 소매용 세트상품은 그것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고려 중인 상품에 따라 다름)</u></p> <p>Explanatory Note Rule 3(b)(VIII)는 상품의 용도와 관련하여 구성 품의 특성, 묶음, 수량, 중량 또는 가치, 재료 또는 구성 재료의 역할과 같은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본 세트의 본질적 특성은 HRV와 ERV 기계식 환기 시스템에 의해 부여됨</p> <p><u>HRV와 ERV만 판매하거나 제어기, 타이머 그리고 리피터와 함께 팔거나 적용 가능한 소호는 8479.89.6500임</u> 별도로 수입된 Lifebreath Digital Control 99-DXPL02에 적용되는 소호는 HTSUS, 9032.89.6070이며 리피터에 해당하는 소호는 HTSUS, 8517.62.0090임</p> <p>만일 HTSUS 규정상 전체 세트로서 분류되는 상품이 301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비록 세트가 301조의 목록에 포함된 소호로 분류되는 구성품을 포함 하더라도 301조는 개별 구성품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p> <p>따라서 컨트롤, 리피터 및 타이머와 함께 포장된 HRV 또는 ERV 세트는 HTSUS 규정에 따라 전체 세트로서 분류되어 301조의 적용대상이 아님</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ERV 세트는 캐나다산임.</p>

<연번50> 자전거 보관대(Bicycle rack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6015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NAFTA
	참조규칙 References	K81374 952951 816038 563205 N302769		
	변경규칙 Modifies			
2019.09.20.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708.99.8180	O	25% (2019.5.10.-)	724,792	321,751
사례명 Case	자전거 보관대의 원산지 및 품목 분류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bicycle racks.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Kuat Transfer 2 자전거 보관대로 부품번호 TS02B (UPC 896581002829)임</p> <p>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전거 보관대 공정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공정과정의 이루어진 한곳은 대만, 또 다른 한 곳은 멕시코임</p>			
쟁점사항 Issues	자전거 보관대의 원산지국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General Not(GN)12(b)에 따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NAFTA 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인한 상품” 으로서 관세율표에서 규정된 관세처리 및 양적 제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또는 (ii) 캐나다, 멕시코 및 / 또는 미국 영토에서 변형되어 2. General Note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 비원산지 물질로 (r),(s),(t)에 규정된 품목이 변경됨. <p>사안에 적용해 보면, (i)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함 <u>자전거 보관대를 이루는 구성품은 중국산과 멕시코산으로 이루어짐</u> <u>중국에서 이루어진 공정과정에서 제조된 hitch조립품은 8708.99로 품목변경을 충족시키지 못함</u> 참조규칙:K81374, 952951, 816038</p>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사안에 적용해 보면 수입품인 테(rim)는 멕시코산도, 또 완전히 획득되지 아니한 부품임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음</p> <p>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TSUS, 8708.99에 해당하는 hitch는 단일 구성품으로 품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u>완성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이 무엇이나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진다는 점에 따라 최종완성품에 대한 원산지는 hitch를 제조한 국가임</u></p> <p>그럼에도 불구하고 301조, 232조, 201조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변형분석이 적용 가능함 <u>결론적으로 hitch와 U-fork조립품은 보관대를 위해 필수적인 프레임을 형성하고 또한 필수 구성품임.</u></p> <p>따라서 두 부품 모두 다른 추가된 부품을 제외하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작업으로 물리적인 변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는 중국임</p> <p>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이 NAFTA 협정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법이 대만에서 수행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함</p> <p>두 시나리오 모두 Kuat Transfer 2 자전거 보관대의 원산지는 중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51> 자전거용 바퀴테(Bicycle wheel rim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563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734478 N305268		
2019.08.10.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5% (2019.5.10.-)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714.92.1000	O		-	-
사례명 Case	자전거용 바퀴테의 원산지 및 품목분류. N305268규칙에 대한 정정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bicycle wheel rims. Correction to Ruling Number N305268			
사실관계 Facts	<p>※N305268결정에 오기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사례임.</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중국, 스위스 및 대만에서 제조된 부품으로 대만에서 조립된 5가지 스타일의 자전거용 바퀴테로,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XRC120BFIXCO05023 2. WXRC120TFDRCO05027 3. W0E1900TFDQSO07069 4. W0M1700BFIXSO05147 5. WEX1700TFDRSO11455 <p>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퀴테는 중국에서 제조됨 2. 접속관은 스위스에서 제조됨 3. 바퀴살은 스위스 또는 대만 제조됨 4. 바퀴 허브, 테두리 테이프, 밸브, 세척기 및 설명서는 대만에서 제작됨 			
쟁점사항 Issues	자전거용 바퀴테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참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참고사례; HQ 73447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BP는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을 대만에서 수입하여 다른 부품과 조립하고 산화염색 및 페인트화한 것은 프레임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 2. 본 결정에서 자전거 프레임은 가장 비싼 부품이고 자전거 전체의 형태, 사이즈 그리고 특성을 부여하는 자전거의 기본적인 구성품 중 하나인 점에 주목함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참고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부품은 미완성된 테두리임. 대만에서 수행된 조립작업이 있더라도 그러한 작업수행은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며 테두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잃지 않고서 새로운 상업품의 일부로 통합됨</p> <p>따라서 완성된 자전거용 바퀴테두리는 중국산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52> 광학요소(Optical element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83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7.10.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02.90.9500	O	25% (2018.7.6.-)	1,898	1,142
사례명 Case	대만과 중국의 광학 성분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optical elements from Taiwan and China			
사실관계 Facts	<p>제품 구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백업카메라(backup camera)로서 기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SKU 625-1330-000은 두 겹의 BEF(Brightness Enhancement Film)이 부착된 확산판으로 가장자리는 특수 설계된 테이프로 밀봉. 끝 라이너는 BEF 위에 배치되어 운송 중에 보호 SKU 625-0689-000은 ESR (Enhanced Specular Reflector) 필름, 맞춤형 디자인의 라이트 가이드, 확산판 및 두 겹의 BEF가 부착된 광학 트레이로 구성됨. 동일한 테이프와 라이너가 제품을 완성하는데 사용됨 SKU 625-1112-000과 EXP625-1112-000은 동일한 제조 및 기능을함. 광학트레이, ESR, 라이트 가이드와 확산판으로 구성됨. 테이프와 라이너를 부착하기 전, 3 겹의 BEF 레이어가 부착됨 SKU 625-1670-000은 광학 트레이, 반사판, 라이트 가이드, 확산판 그리고 2겹의 BEF로 구성됨 <p>제품 원산지 및 공정과정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SKU 625-1330-000, 625-0689-000, 625-1112-000 및 625-1670-00광학요소는 대만산이며 광학트레이와 라이트 가이드는 중국산임. 이들 부품은 대만에서 조립됨 SKU EXP625-1112-000 부품은 모두 중국산이며 대만에서 마지막 조립을 거침 			
쟁점사항 Issues	광학성분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대만산 광학성분은 최종완제품인 백업 카메라의 본질을 이룸. 따라서 최종품의 본질을 이루는 광학성분을 생산한 대만이 원산지임</p>			

	<p>이와 반대로 중국산 부품으로 모두 이루어진 EXP625-1112-000의 경우는 대만에 서의 가공처리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원산지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SKU 625-1330-000, 625-0689-000, 625-1112-000 및 625-1670-000의 원산지는 대만임. SKU EXP625-1112-000의 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53> 팝립스 팝그립(PopLips PopGrip)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6037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55685 555148 H301619 H285605		
	변경규칙 Modifies			
2019.09.17.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801.00.1098 (추정)	X	-	155,783	59,092
사례명 Case	팝립스 팝그립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opLips PopGrip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팝립스 팝그립으로 “Popsockets” 그립(grip)과 립밤 컴팩트가 포함된 복합제품임</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립은 중국산이며 립밤은 미국산임(그립을 미국으로 수입함) 2. 두 구성품이 멕시코에 있는 마킬라도라에 각각 운송됨 3. 멕시코에서 그립과 립밤이 소매용 포장으로 함께 포장된 다음 미국으로 재수입됨 			
쟁점사항 Issues	팝립스 팝그립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NAFTA 원산지국 결정을 위한 표지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102.11(a)(3)에 따르면 수입품 원산지국을 결정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각 외국산 재료는 102.20장에 규정된 품목분류에서 적용되는 변경을 거치며 본 장의 기타 다른 적용되는 요건사항을 충족함. 또한 본 규칙의 기타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사항을 충족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립과 립밤으로 이루어진 팝립스 팝그립은 멕시코에서 포장만 했을 뿐이므로 필수조건인 품목분류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p> <p>본 상품이 복합제품이고 플라스틱 구성품과 립밤은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사안을 살펴보면 포장은 단순한 작업이고 표시 목적상, 원산지국은 중국과 미국임. 따라서 포장지에 “중국산 부품” 그리고 “미국산 립밤” 으로 표시가 가능함</p>			

	<p>301조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중국산 구성품이 원래 미국으로 수입되었고 다시 미국으로 재수입되었기 때문에 301조의 적용대상이 안됨 (9801.00.10)</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플라스틱 제품 Grip의 원산지국은 중국임. 립밤의 원산지국은 미국임</p>
<p>참고사진</p>	 <p>The image shows three items: a black bowl with red lip prints on its rim and base, a gold smartphone with a black grip attached to its back, and several lip balm containers with lip prints on their caps.</p>

<연번54> 방열판(Heat sink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040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3.14.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414.59.6595 (추정)	O	25% (2019.5.10.-)	1,175	2,808
사례명 Case	베트남산 방열판에 대한 표시 및 원산지국 The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 of heat sinks from Vietnam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방열판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주 중앙처리 장치(CPU)칩을 냉각시키기 위한 상품임)</p> <p>최종 제품은 세 가지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트남산 알루미늄 베이스 2. 베트남산 알루미늄 핀 3. 중국산 구리 히트 파이프(copper heat pipes)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트남에서 알루미늄 베이스, 알루미늄 핀, 구리 파이프와 다양한 소형 부품들(베트남산 연결기, 역전류기 및 세척기)로 방열판으로 제조함 <p>방열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p> <p>핀이 있는 구성품을 통해 열을 방출하여 작동함</p> <p>공기의 흐름이 핀을 통해 혹은 주변으로 흐를 때, 열을 끌어내어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원리임</p> <p>본 상품의 특징은 생성된 열을 다양한 핀으로 된 구성품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리 히트 파이프를 사용한다는 것임</p>			
쟁점사항 Issues	방열판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NAFTA 협정국의 상품은 NAFTA 표시규칙(19 CFR 102에 명시)이 원산지를 결정함</p> <p>-19 CFR 102.11(a)(3)은:</p> <p>섬유 및 의류품 이외의 수입품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p>			

	<p>각 외국산 재료는 102.20장에 규정된 품목분류에서 적용되는 변경을 거치며 본장의 기타 다른 적용되는 요건사항을 충족함. 또한 본 규칙의 기타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사항을 충족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트남산인 알루미늄 핀이 방열판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했다고 봄 하지만 최종 완성품인, 방열판을 제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베트남에서의 공정과정은 최종제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봄 또한 각 구성품은 미리 정해진 용도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용도와 기능이 베트남에서의 가공으로 변형되지 않았고 본 것임</p> <p>따라서 원산지 판단에 최종완성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부품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방열판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55> 냉장 또는 냉동기기(Refrigerating or Freezing unit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178	카테고리 Category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7.25.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418.10 (추정)	○	25% (2019.5.10.-)	905,578	520,545
8418.21 (추정)	○	25% (2019.5.10.-)	12,456	7,666
사례명 Case	냉장 또는 냉동기기의 원산지와 301조의 특정 구제조치 적용 The country of origin of refrigerating or freezing units and the applicability of certain trade remedies under Section 301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냉장 또는 냉동기기에 대한 원산지 및 301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함. 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BCD296 및 BCD510은 상단에 장착한 냉동고가 있는 냉장기기 BD481 모델은 기기의 내부 설정에 따라 냉장고로 변환할 수 있는 직립 냉동고임 -각 기기는 중국산으로 결합된 부품과 하위조립품을 제조하는 과정들을 통해 완성된 제품임 -모든 생산과정은 태국에서 완료됨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냉장 장치의 생산은 태국 또는 중국산인 원자재를 구체적 형성을 띤 파이프, 내부라이너(inner liner), 단열재, 바닥판 사전 조립품(a bottom plate pre-assembly), 후면판 사전 조립품 및 통풍관 공기통 사전 조립품으로 가공함 우레탄과 성형기로 캐비닛을 만들고, 후면판으로 조립품을 덮고, 도선조립품을 배열한 후, 다른 면에 있는 내부라이너와 연결시킴으로써 공정처리를 함 			
쟁점사항 Issues	냉장 또는 냉동기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부품 또는 원자재의 결합이 실질적인 변형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는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부품이 그 고유의 특성을 잃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 부분이 되었는지의 여부임</p> <p>따라서 태국에서의 생산 공정은 필수 냉각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품 및 하위조립품이 복잡한 공정을 통해 별도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상업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함</p> <p>즉, BCD296, BCD510 및 BD481 모델에 대한 원산지는 태국이며 따라서 301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냉장 또는 냉동장치의 원산지는 태국임.</p>

<연번56> 미완성 우편요금계기(incomplete postage met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352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6.06.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470.90 (추정)	○	25% (2019.5.10.-)	108	138
사례명 Case	미완성 우편요금 계기에 대한 원산지 Country of origin of an incomplete postage meter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에 대한 원산지 결정요청을 함.</p> <p>제품 구성요소 및 제조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의 주요 구성품은 인쇄 축(print axis), 프린터 모듈 베이스 조립품, 운송조립품, 폐잉크트레이(waste ink tray), 절단기 조립품, 테이프 운송 조립품 그리고 덮개 조립품(cover assembly)으로 이루어짐 2. 말레이시아산 인쇄 축을 미국산 펄웨어와 통합시킴(말레이시아산이라고는 하나 보증을 하지 못한 상태임) 3. 인쇄 축 이외의 하위 부품은 중국산이며 인쇄 축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부품은 중국산이 10.8%만을 차지함 4. 인쇄 축 이외의 하위부품 모두 최종 조립이전에 중국에서 조립됨 			
쟁점사항 Issues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CBP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다양한 원산지 구성품이 완전한 제품으로 조립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과 사안별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 구성의 원산지 2. 한 국가에서 일어난 가공처리의 정도 3. 그러한 가공처리가 새로운 품명, 특성 또는 용도로 바뀌었는지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임 4. 제품 설계 및 개발에 소비된 자원, 조립 후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 및 특성, 실제 제조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작업자 기술과 같은 요소가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 고려됨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프린트 축의 하위조립품을 제외하고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의 다양한 하위조립품 들은 주로 중국산으로 중국에서 모두 조립되었고 조립과정의 복잡성 문제는 다양한 하위조립품을 조립하는데 국한되지 않음</p> <p>인쇄기 축이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의 다른 부품과 조립되었을 때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미완성 우편요금계기를 제조하기 위해 중국에서 이루어진 조립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인쇄기 축을 제외하고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의 하위부품들이 중국에서 조립되었고 인쇄기 축과의 최종조립 역시 중국에서 이루어짐</p> <p>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의 원산지는 중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미완성 우편요금계기의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57> 일체형 컴퓨터(All-in-one comput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378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8.01.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471.41 (추정)	O	15% (2019.9.1.-)	10,627	5,978
사례명 Case	일체형 컴퓨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n all-in-one computer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AIO 터치 스크린(AIO), PN E462193으로 POS(Point of Sale) 기계 및 유사한 응용 프로그램의 상업용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터치 스크린 컴퓨팅 장치임</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머더보드 및 제어 PCBA를 인클로저에 장착하고 케이블 연결, 인클로저 및 무선 안테나 모듈 조립 및 LCD 모듈을 장착함 2.이후 AIO는 펌웨어 및 운영 체제를 수신하고 테스트를 거쳐 출하용으로 포장됨 <p>-AIO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중국에서 공급됨</p> <p>-조립은 대만에서 수행됨</p>			
쟁점사항 Issues	일체형 컴퓨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제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대만에서 수행된 부착 작업, 고정 작업, 테이핑 및 또는 접착 등의 가공처리는</p>			

	<p>복잡하지 않은 작업 절차임</p> <p>AIO는 터치스크린컴퓨팅 장치를 만들기 위해 하위부품을 함께 결합하여 생산되지만 중국산인 하위부품에 물리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음. 따라서 AIO 터치 스크린 (AIO), PN E462193은 미국으로 수입할 당시 원산지 및 표시 목적상 중국제품으로 간주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58> 데스크 탑 개인용 컴퓨터(Desktop personal comput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852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9.06.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품목번호 Tariff No				
8471.41 (추정)	○	15% (2019.9.1.-)	10,627	5,978
사례명 Case	데스크 탑 개인용 컴퓨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a desktop personal computer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스크 탑 컴퓨터 모델 DB400S7B로 개인용 컴퓨터(PC)임 2. PC는 한국에서 조립되었고 이후 미국에서 마우스와 키보드가 함께 포장된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에서 수행된 조립공정에는 Barebone 하위조립품으로 식별되는 인클로저에 기능성 자동데이터처리기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Barebone 하위조립품은 드라이브 슬롯과 버팀대가 있는 금속 인클로저, 마더보드, 전원 공급 장치 및 전기 케이블로 구성됨 2. 한국에서 운영시스템을 하드드라이브와 CPU, 메모리 모듈, 하드 드라이브에 도입하고, 케이블은 Barebone 하위품에 설치함 			
쟁점사항 Issues	데스크 탑 개인용 컴퓨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에서 제조되고 마더보드를 포함하는 Barebone 하위조립품은 완성된 기계의 본질을 제공함</p>			

	<p>PC는 자동데이터처리기계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하위조립품을 함께 조립만 함으로써 생산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가공처리는 복잡하지 않음. 이러한 공정과정으로 Barebone 하위조립품은 그 결과로서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p> <p>따라서 Barebone 하위조립품은 중국에서 수입할 시의 상품과 구별되는 다른 새로운 품명, 특성 그리고 용도를 가진 상업품으로 변경되지 않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59> 전기모터 (Electric moto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299096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8.07.25.	변경규칙 Modifies	H300226 H301619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1.10.4060	○	25% (2018.7.6.-)	15,317	24,991
사례명 Case	멕시코산 전기모터에 대한 원산지 및 품목분류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of electric motors from Mexico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직류전기모터 1999-1020656EP로 최대 출력 5.793 와트의 브러시 전기모터 (brushed electric motor)임 전기모터는 전기도어잠금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함</p> <p>모터 조립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고정기(stator) 또는 리어 하우징, PN 1300-M020005; 회전기 또는 전기자 조립체 (armature assembly), 1100-M020010; 그리고 엔드캡조립품(end cap assembly), 1200-M020007</p>			
쟁점사항 Issues	전기모터에 대한 원산지국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102.11(d)(2)에 따르면 만일 상품이 단순 조립으로 생산되고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동등한 고려를 할 가치가 있는 조립된 부품이 동일 국가이면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는 이러한 부품의 원산지임</p> <p>단순조립은 19 CFR 102.14(o)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볼트, 접착제, 납땜, 재봉질 그리고 단순가공이상 없이 기타 다른 수단으로 5개 이내의 외국산 부품(나사, 볼트와 같은 잠금장치 제외)이 함께 조립된 것으로 봄.</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전기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결합된 3개의 외국산 하위부품이 있으며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제조과정은 그저 단순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단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직류 전동기 1999-1020656EP의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60> 스테퍼 모터(Stepper moto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251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8.01.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1.10.40 (추정)	O	25% (2018.7.6.-)	23,289	29,909
사례명 Case	스테퍼 모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stepper motor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스테퍼 모터에 대한 원산지와 301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테퍼 모터는 고정자, 회전자, 도르래, 끝단 캡, 축, 베어링 2. 다양한 하드웨어, 와이어 커넥터 그리고 절연체 <p>Lin Engineering, Inc.,사는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고정자와 회전자는 고정자와 회전자 스택(stack)에 압축한 코일로부터 강철 슬릿(slot)을 찍어 일본에서 제조함 스테퍼 모터의 구성품의 편칭은 중국에서 공급받음 기능성 모터에 스테퍼 모터구성품의 조립은 중국에서 수행됨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고정자와 회전자는 고정자와 회전자 스택(stack)에 압축한 코일로부터 강철 슬릿(slot)을 찍어 중국에서 제조함 와이어는 대만산이며 베어링은 태국산임 스테퍼 모터의 구성품의 편칭은 베트남산임 기능성 모터에 스테퍼 모터구성품의 조립은 베트남에서 수행됨 3.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정자와 회전자는 고정자와 회전자 스택(stack)에 압축한 코일로부터 강철 슬릿(slot)을 찍어 베트남에서 제조됨 와이어, 도르래, 축, 베어링 그리고 하드웨어는 중국산임 기능성 모터에 스테퍼 모터 구성품의 조립은 베트남에서 수행됨 			
쟁점사항 Issues	스테퍼 모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고정자 및 회전자는 완성된 스테퍼 모터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봄</p> <p>최종 완성품의 본질 역할을 하는 부품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의 원산지는 일본이며 세 번째 시나리오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p>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의 원산국은 중국산으로 판정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시나리오 1과 3에 따른 원산지는 각각 일본과 베트남이지만 시나리오 2는 중국산임.</p> <p>시나리오2에 대해서만 301조가 적용됨.</p>

<연번61> 전기모터(Electric moto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707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63205 N301975 H300226		
2019.03.18.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1.31	O	25% (2018.7.6.-)	142,489	67,371
사례명 Case	멕시코산 전기모터에 대한 301조의 적용 여부 The application of Section 301 remedies for electric motors from Mexico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전기 모터에 대한 301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및 제품 원산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모터는 PN 1999-1031206으로 식별되며 최고 출력이 42.4 watts를 가진 손질영구자석직류모터로 묘사됨 2. 모터는 멕시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산 부품으로 멕시코에서 제작됨 <p>※NY N301975 결정문에서 모터가 HTSUS, 8501.31.2000으로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모든 구성품이 General Note 12에 따라 필요한 품목변경을 거쳤다고 보았기 때문에 NAFTA에 따라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멕시코 상품으로 본다고 결정하였음</p> <p>본 사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p> <p>전기모터 생산에 사용된 중국산 부품이 HTSUS, 9903.88.01에 따라 무역구제적용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가 의문 사항으로 남음</p>			
쟁점사항 Issues	전기모터 생산에 사용된 중국산 부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반덤핑, 상계관세 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변형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됨.</p> <p>참고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741 F.2d 1368, 1370-71 (Fed. Cir. 1984)</p> <p>위 판례에 따르면 “상품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어도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변형은 어느 국가의 제조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근본적으로 이용되는 시험이라고 함</p> <p>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HQ H300226을 참조하면 해당 전기모터는 3개의 중국산 하위부품으로 멕시코에서</p>			

	<p>만들어졌으며 생산 과정은 단순하고 복잡성이 결여됨 주요할 점은 중국산 3개의 부품이 이미 그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생산 자체가 단순하다는 점임 이에 따라 NAFTA 표시규칙을 충족하여 멕시코산으로 간주하였으나 9903.88.01에 따라 301조의 적용대상이 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HQ H300226에서의 조립 상황과는 달리, 본 사례는 즉석 전기 모터(instant electric motor)로 수행된 제조공정은 구성품 수준의 하위부품 생산, 모터 조립 그리고 최종점검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공정은 멕시코에서 수행됨 NY N301975에서 설명된 재료목록과 생산과정을 살펴보았을 때,모터를 생산하는 제조공정은 원재료와 다양한 구성품으로 전기모터를 생산하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봄</p> <p>따라서 전기모터 PN 1999-1031206은 HTSUS, 소호 9903.88.01에서 언급된, HTSUS U.S. Note 20(b)에 열거된 추가 관세의 대상이 아님</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HTSUS U.S. Note 20(b)에 열거된 추가 관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01조 적용 대상이 안됨. (멕시코산으로 인정)</p>

<연번62> 광전지 지붕 타일(Photovoltaic roof til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846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2019.05.03.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8501.31.8010	○	25% (2018.7.6.-)	142,489	67,371
9903.88.02	○	25% (2018.8.23.-)	-	-
사례명 Case	캐나다의 광전지 지붕 타일 원산지지와 품목분류 The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marking of photovoltaic roof tiles from Canada			
사실관계 Facts	<p>A사의 광전지 지붕 타일에 대해 품목분류와 원산지 판정에 대한 요청을 함.</p>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2cmx33cm의 시멘트 지붕 타일에 부착된 래미네이트를 입힌 태양전지로 구성된 Erogosun Integrated Solar Roof Tile로 식별됨 래미네이션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인쇄회로기판, 에틸렌 테트라플루오로 에틸렌(ethylene tetrafluoroethylene) 그리고 절연 폴리 비닐 플루오라이드 지지체(insulating poly-vinyl fluoride backing)의 사이에 놓인 단결정 광전지 및 버스바(busbars)로 이루어짐 래미네이션 아래쪽에는 차단 다이오드와 전기 퓨즈를 포함한 수(male)커넥터가 있으며 이러한 수 커넥터는 접속 배선함 역할을 함. 암(female)커넥터는 접속 배선함의 나머지 역할을 함 <p>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타일 밑면에 접속 배선함의 배선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으며 접착제로 시멘트 지붕 타일에 패널을 붙임 태양열 타일의 출력은 15W임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열 타일(Solar tile)은 중국에서 모듈에 코팅한 대만산 태양전지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수행된 공정은 모선과 접속배선함을 조립한 후, 단일 광전지 패널을 제조하기 위해 7개의 층을 코팅함. 이 단계에서 중국산 합판은 태양광컨버시 스템으로 분류됨 -중국에서 제조된 코팅광전지 패널을 캐나다에서 수입하여 미국산 시멘트 타일 중앙에 구멍을 내고 접착제로 합판에 접하는 것으로 구성됨 -미국산 시멘트 타일이 합판과 결합되면 조립된 태양열 타일(Solar tile)을 형성함 			

<p>쟁점사항 Issues</p>	<p>광전지 지붕타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의 여부</p>
<p>법과해석 Law And Analysis</p>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 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살펴보아야 할 점은, 캐나다는 NAFTA 협정국이므로 표시목적상,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NAFTA 표시규칙이 적용됨</p> <p>본 사안에서는 완전히 국내산 재료만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102.11(a)(1) and 102.11(a)(2)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102.11(a)(3)이 적용됨.</p> <p>-102.11(a)(3): 품목분류에서 변경을 거친 경우에 NAFTA 협정국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p> <p>캐나다에서 사용된 부품은 중국산 광전지합판(photovoltaic lamination), 미국산 시멘트 타일과 접착제로 확인됨</p> <p>HTSUS, 8501.31.8010으로 분류되는 중국산 래미네이션으로 인하여 태양열 타일이 102.11(a)(3)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의 변경 규칙을 충족하지 못함</p> <p>따라서, 조립물의 본질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단일 재료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102.11(b)에 따라 합판과 그것의 전력 공급 기능은 태양열 타일에 본질적인 특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광전지 지붕 타일의 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63> 시계 충전기(Watch charg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71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6.24.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4.40 (추정)	O	25% (2019.5.10.-)	135,081	81,482
사례명 Case	시계 충전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watch charger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시계 충전기인 Watch Charger SKU:37-0375-01-VW에 대한 원산지국 결정을 요청함.</p> <p>대상품목은 시계 충전기로, Watch Charger SKU:37-0375-01-VW으로 식별되며 한쪽 끝에는 수(male) USB 커넥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자기 충전 모듈이 있는 전기 케이블로 구성된 전자기 유도형 충전기임</p> <p>제품 구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전기케이블, USB 커넥터 및 충전 모듈 2. 베트남산 하우징, 하드웨어 및 인쇄회로기판(PCB)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베트남에서 중국산 USB 커넥터와 베트남산 인쇄회로기판에 전선을 납땜하여 조립함 			
쟁점사항 Issues	시계 충전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중국산 제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았으며 구성품 자체도 수입된 상태에서부터 품명, 특성 그리고 용도를 가진 전혀 새로운 상업품으로 베트남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p> <p>따라서 Watch Charger SKU:37-0375-01-VW는 미국으로 수입 당시 원산지 표시 목적상 중국산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Watch Charger SKU:37-0375-01-VW는 중국산임.</p>

<연번64> 무선충전기(wireless charg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21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6.26.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4.40.8500 (추정)	O	25% (2019.5.10.-)	9,851	5,592
사례명 Case	무선충전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wireless charger			
사실관계 Facts	A사는 (Nebula)무선충전기 패드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 제품 구성 및 공정과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산 플라스틱 하우징, 실리콘 링, 인쇄회로기판, 전선 및 포장재 2. 중국산 부품들을 조립하기 위해 라오스로 수입됨. 라오스에서의 공정은 와이어를 연결하고 인쇄회로기판에 부착, 그리고 상품에 대한 테스트 및 포장으로 이루어짐			
쟁점사항 Issues	무선충전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조립과정은 중국산 상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았으며 구성품 그 자체도 수출 당시의 품목, 특성 및 용도에서 라오스에서의 가공처리로 전혀 다른 상업품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p> <p>따라서 미국으로 수입 당시 원산지 및 표시의 목적상, Nebula 무선충전기 패드는 중국산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무선충전기의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65> 충전어댑터(Charge adapt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50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7.08.	변경 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품목번호 Tariff No	○	25% (2019.5.10.-)	135,081	81,482
사례명 Case	베트남산 충전어댑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charge adapter set from Vietnam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충전어댑터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ightning 2.1 Amp 차량용 충전기 세트로 한쪽 끝에 수(male) USB 커넥터가 있고 다른 쪽 끝에 lightning 커넥터가 있는 6피트 편복 전기 케이블과 12V 전원 어댑터가 포함된 소매 패키지로 구성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복 전기 케이블과 12V 전원 어댑터를 이루는 모든 구성품은 중국에서 공급되며 두 개의 상품의 조립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짐 2. 어댑터 플러그는 베트남에서 22개의 부품(저항기, 콘덴서, 인쇄 회로, 퓨즈, 다이오드 및 LED)을 웨이브 납땀하여 조립함 			
쟁점사항 Issues	충전어댑터의 원산지국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충전어댑터는 세트의 본질을 구성하며 베트남에서의 가공처리로 중국산 구성품인 충전어댑터는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품목, 특성 그리고 용도를 가진 실질적 변형을 이루었다고 판단함</p> <p>따라서 Lightning 2.1 Amp Car Charger set는 미국으로 수입 당시, 원산지 및 표시 목적상 베트남산으로 간주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충전어댑터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66> 전동기 제어기(Motor controlle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10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H301619		
2019.07.16.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9월)
8504.40.4000	○	25% (2018.7.6.-)	17,692	10,453
사례명 Case	캐나다산 전동기 제어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motor controllers from Canad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전동기 제어기에 대한 원산지와 301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 및 원산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C Controller Item #10-000878은 알루미늄 베이스, 3개의 인쇄회로기판조립품(PCBAs), 다양한 하드웨어 그리고 플라스틱 인클로저(enclosure)로 구성됨 AC 제어기는 캐나다산인 Control PCBA 및 Power PCBA와 중국산인 Capacitor PCBA로 식별됨. 알루미늄베이스 및 플라스틱 인클로저는 중국산임 2. DC Controller Item #10-000685는 알루미늄베이스, 2개의 PCBA, 다양한 하드웨어 및 플라스틱 인클로저로 구성됨 DC 제어기는 캐나다산 Control PCBA 및 Power PCBA로 식별됨. 알루미늄 베이스와 플라스틱 인클로저는 중국에서 생산됨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C 제어기는 캐나다에서 축전기, 제어기 그리고 Power PCBA를 알루미늄 베이스에 붙여 조립됨. 이외 펌웨어 프로그래밍과 외부플라스틱 인클로저와 조립됨 2. DC 제어기는 Control 및 Power PCBA를 알루미늄 베이스에 붙여 조립됨. 이외 펌웨어 프로그래밍과 외부플라스틱 인클로저와 조립됨 			
쟁점사항 Issues	전동기 제어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NAFTA 협정국이기 때문에 NAFTA 표시규칙의 표시 목적상, 해당 제어기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됨</p>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02.11(a)(1) 및 102.11(a)(2)에 따르면, -상품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됨 -국내 재료로만 생산됨 -해당 상품에 포함된 각 외국 물품은 102.20에 규정된 품목 분류의 적용 가능한 변경을 거치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규칙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킴</p> <p>102.11(a)(3)에 따르면, 상품을 구성하는 각 외국산 재료는 102.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분류에서 적용 가능한 변경을 이루며 다른 적용 가능한 요건사항을 충족함</p> <p>본 사안에는 102.11(a)(1) 및 102.11(a)(2)적용이 안되며 따라서 102.11(a)(3)에 따라 판단함 이에 따라, 두 개의 전동기 제어기는 HTSUS, 8504.40.4000으로 분류됨</p> <p>중국에서 수입된 구성품은 8504.90으로 분류되지만 이미 전동기 제어기는 8504로 분류되기 때문에 품목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봄 하지만 301조 적용의 목적상, 실질적인 변형시험이 원산지를 결정함 CBP는 Control 및 Power PCBA는 완제품인 제어기에 특성을 부여한다고 봄 이러한 구성품은 캐나다에서 수행된 조립과정 또는 중국산재료의 추가로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AC 제어기와 DC 제어기는 301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전동기 제어기의 원산지는 캐나다임.

<연번67> 무선 충전패드(Wireless charging pad)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66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9.03.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4.40.8500 (추정)	O	25% (2019.5.10.-)	9,851	4,647
사례명 Case	무선 충전패드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wireless charging pad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Umbra Qi 무선 충전패드(스마트폰 충전기)로 개인전자장비용 유도형 충전기로 설명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플라스틱 주형 하우징, 인쇄회로기판조립품(PCBA), 충전 코일 및 전원케이블</p>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전원케이블은 베트남에서 제조됨 2. PCBA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하우징, 그리고 충전 코일은 중국에서 제조됨 3. 베트남으로 운송되어 조립작업을 거침. PCBA를 생산하기 위해 표면 실장 납땀 공정으로 베어 인쇄회로기판, 집적회로, 저항기 및 축전기로 조립됨</p>			
쟁점사항 Issues	무선 충전패드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제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산 부품으로 베트남에서 수행된 납땀을 통한 PCBA생산은 중국산 부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줌</p> <p>이러한 PCBA는 전기충전장치의 본질을 부여함</p> <p>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충전패드를 이루는 구성품은 수출 때와 구별되는 다른 새로운 품명, 특성 그리고 용도를 가진 상업품으로 변형된 것으로 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68>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710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4.26.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8.11.00	○	25% (2019.5.10.-)	3,406	4,785
사례명 Case	베트남의 진공청소기에 대한 원산지 및 무역구제 301조 The country of origin and Section 301 trade remedy of vacuum cleaners from Vietnam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진공청소기, the NEU18 Series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으로 설계된 직립형 전동식 진공청소기를 포함하며 먼지 용기(먼지 컵) 용량이 4.1L인 960W로 설계됨 2. 진공청소기는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포장되었으며 각 제품은 해당 부속품과 함께 하나로 포장되어 판매됨. 3. 색상, 액세서리 또는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다른 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시리즈별 모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리즈별로 한 두 개의 부품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함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NEU18시리즈는 대략 30개가 넘는 부품과 하위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브러쉬, 페달, crevice tub, 모터조립물, 전원 코드 및 스위치)가 중국산임 2. 나머지 부품은 베트남산이며 최종조립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짐 - 베트남산 주요 하위조립품은 먼지용기(먼지 컵), 브러쉬, 본체임 			
쟁점사항 Issues	진공청소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트남으로 수입된 재료 및 부품(브러쉬, 페달, crevice 튜브, 모터 조립, 전력 코드 및 스위치)이 다른 하위조립품으로 제조되어 해당 NEU18시리즈 진공청소기로 최종 조립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은 모든 수입 재료 및 구성품이 베트남산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진공청소기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69> 로봇진공청소기(Robotic vacuum clean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15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7.31.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8.11.0000	○	25% (2019.5.10.-)	3,406	4,785
사례명 Case	로봇진공청소기의 원산지 및 301조의 적용 The country of origin and section 301 trade remedy of the Robotic Vacuum Cleaner			
사실관계 Facts	<p>A사는 Roomba® 670 시리즈 로봇진공청소기에 대한 원산지와 301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1. 세트에는 Roomba® 진공 로봇, 충전식 배터리, 재충전용 도킹 스테이션 및 전원 코드가 포함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 Roomba®진공로봇은 약1,00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많은 부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모듈 하위조립품으로 제작됨 모듈은 주인쇄회로기관과 연결 및 프로그래밍되어 완성된 Roomba®으로 제조됨</p> <p>2. 말레이시아에서 4개의 개별 핵심 모듈 하위조립품을 생산함(이외 새시와 모듈에 사용된 모든 플라스틱은 말레이시아산임. 플라스틱 새시는 Roomba®의 중요한 구성품임)</p> <p>각 모듈은 완성된 Roomba®의 주요 구성요소로 역할을 함</p> <p>이러한 모듈은 대부분이 말레이시아산인 부품과 함께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된 구성품으로 제작됨</p> <p>모듈 중 3개는 중국에서 제조되어 말레이시아로 운송됨</p> <p>① Cleaning Head Assembly ② Light Touch Sensor-Assembly ③ The Side Brush Assembly</p> <p>-이후, 중국산 추가 모듈이 Roomba®에 조립되는데 그러한 모듈은 Battery, Dock, Virtual Wall을 포함함</p> <p>공정과정에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1. 주 인쇄회로기관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원 공급 장치, 모터 드라이버, Wi-Fi 안테나 모듈, 쌍안경 센서 및 주변 부품</p>			

	<p>2. 바퀴 모듈 새시의 반대편에 있으며 중국 원산지 기어 모터 부품과 말레이시아산 플라스틱 하우징, 배선 하네스 및 휠</p> <p>3. Cliff Harness Module 와이어 하네스, 클리프 센서 및 범퍼 스위치</p> <p>4. Bin Module 말레이시아산 하우징과 임펠러/팬과 중국산 필터 및 모터</p>
<p>쟁점사항 Issues</p>	<p>로봇진공청소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p>
<p>법과해석 Law And Analysis</p>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제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CBP의 의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된 가공으로 수입된 재료/구성품은 말레이시아산으로 제품화되어 실질적인 변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함</p> <p>말레이시아에서의 공정은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구성품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특성과 용도를 가진 다른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냈다고 봄. 따라서 Roomba®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p> <p>또한 30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전체 세트가 301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로봇진공청소기의 원산지는 말레이시아임.</p>

<연번70>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221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N305221		
2019.08.07.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08.11 (추정)	O	25% (2019.5.10.-)	3,406	4,785
사례명 Case	베트남산 진공청소기의 원산지 및 301조의 적용 The Country of Origin of Vacuum Cleaners from Vietnam and Applicability of Section 301 Trade Remedie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진공청소기, the NEU18 Series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으로 설계된 직립형 전동식 진공청소기를 포함하며 먼지 용기(먼지 컵) 용량이 4.1L인 960W로 설계됨 2. 진공청소기는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포장되었으며 각 제품은 해당 부속품과 함께 하나로 포장되어 판매됨. 3. 색상, 액세서리 또는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다른 시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시리즈별 모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시리즈별로 한 두 개의 부품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함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NEU18시리즈는 대략 30개가 넘는 부품과 하위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브러쉬, 페달, crevice tub, 모터조립물, 전원 코드 및 스위치)가 중국산임 2. 나머지 부품은 베트남산이며 최종조립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짐 -베트남산 주요 하위조립품은 먼지용기(먼지 컵), 브러쉬, 본체임 			
쟁점사항 Issues	진공청소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제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트남으로 수입된 재료 및 부품(브러쉬, 페달, crevice 튜브, 모터 조립, 전력 코드 및 스위치)이 다른 하위조립품으로 제조되어 해당 NEU18시리즈 진공청소기로 최종</p>			

	<p>조립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은 모든 수입 재료 및 구성품이 베트남산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진공청소기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71> 핸드폰(Cellular telephon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008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3.08.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17.12.0050 (추정)	O	15% (2019.9.1.-)	3,849,766	2,369,840
사례명 Case	중국산 핸드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cellular telephones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두 모델의 핸드폰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두 모델은 XP8과 XP5이며 세 번의 생산 공정단계를 설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회로기판조립품(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u>PCBA</u>)이 제조됨. SMT(Surface Mounting Techonology)를 통해 완제품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서, 메모리, 블루투스 및 관련 마이크로칩을 포함하여 트랜지스터, 저항기, 다이오드, 축전기 및 기타 전자부품을 미가공회로기판에 부착하기 위해 이용됨 제품을 작동시키는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PCBA에 다운로드함 <u>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는 대만,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임</u> 휴대폰의 하드웨어는 일련의 하위조립품 및 기타 구성품(PCBA, 하우징, 스크린, 키/키패드, USB 커넥터, 배터리 및 안테나)으로 조립됨 <u>기타 하드웨어 하위조립품/주요 구성품은 중국산임 또한 2단계 공정은 중국에서 수행됨</u> 개별 조립된 장치는 고객 특정 소프트웨어로 신호를 보내며 충전기, 여분의 배터리 및 기타 특정 고객이 주문한 주변장치로 포장하는 공정이 이뤄짐 <u>고객소프트웨어플래싱(customer software flashing, 비막이장치)은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포장작업은 미국에서 이루어짐</u> 			
쟁점사항 Issues	휴대폰 두 모델에 대한 원산지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NAFTA 협정국의 상품은 NAFTA 표시규칙(19 CFR 102에 명시)이 원산지를 결정함</p>			

	<p>-19 CFR 102.11(a)(3)은: 섬유 및 의류품 이외의 수입품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각 외국산 재료는 102.20장에 규정된 품목분류에서 적용되는 변경을 거치며 본 장의 기타 다른 적용되는 요건사항을 충족함. 또한 본 규칙의 기타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사항을 충족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1단계에서 제조된 PCBA가 휴대 전화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2단계와 3단계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휴대폰의 본질적 특성을 이루는 PCBA에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휴대폰은 1단계의 공정과정(PCBA)이 진행된 국가에 따라 대만,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산이 됨.</p>

<연번72> 모뎀과 게이트웨이(Modems and gateway)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1484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63205		
2018.11.27.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17.62.0010	O	25% (2019.5.10.-)	794	593
사례명 Case	멕시코의 모뎀과 게이트웨이에 대한 표시와 원산지국 The Marking and Country of Origin of Modems and Gateways from Mexico			
사실관계 Facts	<p>A사는 Wi-Fi 게이트웨이가 있는 케이블 모뎀과 Wi-Fi 게이트웨이가 없는 케이블 모뎀에 대한 원산지와 표시에 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로컬 컴퓨터, 네트워크, 스마트폰, 스마트 TV 또는 기타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됨</p> <p>모든 모델은 소매판매를 위해 완전히 조립된 후, 포장되어 수입됨 또한 모든 모델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됨</p> <p>첫 번째 대표적인 모델은 MB8600으로 약 1Gbps의 속도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최적화된 DOCSIS 3.1 모뎀임 MB8600은 이더넷 포트 결합과 Active Queue Management를 지원하여 화상 회의 및 온라인 게임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빠른 연결을 지원함</p> <p>두 번째 대표적인 모델은 MG7315로 첫 번째 모델과 함께 DOCSIS 3.1 모뎀임. 컴퓨터, 프린터, 휴대폰, 스마트 TV 및 기타 장치를 포함하여 올바로 변환된 장치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Wi-Fi router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모델과 다름</p> <p>운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재료는 중국산이며 대량으로 포장된 보드 조립품은 용기부품, 피트, 나사 및 라벨을 포함한 구성품의 나머지와 별도의 박스로 운송됨 2. 용기부품, 피트, 나사 및 라벨은 또한 보드 조립품들과 다른 날에 대량으로 포장되어 별도의 운송을 통해 멕시코에 도착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부품을 멕시코에서 수령하면 일단 모든 재료는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에 들어감 2.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PCBA)을 프로그램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PCBA를 6개의 플라스틱부품으로 구성된 용기에 조립함 4. 조립한 후, 접착성 고무 피트를 바닥에 놓음. 고무 피트는 케이블 모뎀을 선반이나 다른 표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함 6. 접착성 라벨을 케이블 모뎀에 붙임. 이러한 라벨은 시리얼 번호와 MAC 주소로 unit을 확인하고 개별 케이블 모뎀에 특징을 부여함 7. 조립 후, 장치를 스캔하여 필요한 케이블모뎀증서에 따라 정확한 시리얼 넘버와 MAC 주소를 로드함 8. 적절한 주소와 증서 없이는 케이블 모뎀은 작동하지 않으며 무선 기능이 있는 케이블 모뎀의 경우, Wi-Fi 네트워크 이름과 키를 스캔함 9. 제품에 대한 모델 번호와 적합성 증서를 포함한 표준정보와 함께 스캔한 항목을 포함하는 라벨이 인쇄됨 10. 라벨을 unit 바닥에 부착함 11. 케이스 unit을 케이블 모뎀 터미네이션 시스템(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CMTS)이라고 하는 특정 장치에 부착함 12. CMTS는 DOCSIS 기준을 사용한 동축 케이블을 통해 고속데이터전송을 가능하게 함 13. 펌웨어, MAC 주소 그리고 케이블모뎀증서와 함께 케이블 모뎀이 DOCSIS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함
<p>쟁점사항 Issues</p>	<p>케이블 모뎀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p>
<p>법과해석 Law And Analysis</p>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멕시코는 NAFTA 협정국으로 NAFTA 표시규칙이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됨.</p> <p>102.11(a)(1) 및 102.11(a)(2)에 따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됨 -국내 재료로만 생산됨 -해당 상품에 포함된 각 외국 물품은 102.20에 규정된 품목 분류의 적용 가능한 변경을 거치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규칙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킴

	<p>본 사안에서는 완전히 국내산 재료만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102.11(a)(3)이 적용됨. 102.11(a)(3): 품목 분류에서 변경을 거친 경우에 NAFTA 협정국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음</p> <p>※102.11(a)(3)을 살펴보면 “외국산”은 19 C.F.R. § 102.1(e)에서 상품이 생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재료로 설명됨. 102.20에서 8517.62.0010에 적용 가능한 규칙은 변경이 단순조립의 결과일 때 8504.90 또는 8473 또는 8517.70을 제외하고 8517.62에서 8517.69인 상품에서 8517.62에서 8517.69인 다른 단위로의 변경을 해야 함</p> <p>두 모델의 외국산 부품은 HTSUS, 소호 8517.70으로 구분되며 품목변경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함</p> <p>원산지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음. 외국산 부품(PCBA, 하우징/케이스, 고무피트, 라벨) 모두 미리 결정된 최종용도를 갖추고 있으며 멕시코에서의 조립과정으로 변형을 겪지 않음 따라서 멕시코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은 중국산 구성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았지만 품목변경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함</p> <p>※신고 시, 품목번호 8517.62.0010에 추가하여 9903.88.04를 보고해야 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두 모델 모델의 원산지는 표시 목적상 멕시코임. 하지만 9903.88.04 적용 목적상 두 모델의 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73> 광섬유케이블조립품(Fiber optic cable assembli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844	카테고리 Category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9.10.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17.62.00 (추정)	○	25% (2019.5.10.-)	331,623	70,946
사례명 Case	광섬유케이블조립품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fiber optic cable assemblie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C-LC SM Duplex Riser, 2.0mm, 2m 2. SC/APC Pigtail BI SM Simplex 2mm, 5ft 3. SC/APC-SC/APC SM SX EZ Bend 3mm, 10ft 4. SC/APC Simplex Indoor Pigtail Riser 3mm, 1m 5. SC/APC-SC/APC SM Simplex Riser 2mm, 2m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가지 품목 모두 미국산인 광섬유 또는 광섬유케이블로 이를 중국으로 수출함 2. 중국에서 추가가공처리와 중국과 대만산 상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함 -광섬유의 경우, 케블러(Kevlar)를 입히고 길이에 맞게 절단함 			
쟁점사항 Issues	광섬유케이블조립품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대상 품목 5가지 광케이블 조립품의 원산지는 미국임. 따라서 본 사례의 상품 원산지는 미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미국임.			

<연번74> NA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NAFTA)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2480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82390 734518 N301484 H282390 H219519		
2019.09.13.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17.62.00	O	25% (2019.5.10.-)	331,623	70,946
사례명 Case	MY N301484에 대한 재고려; NA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Reconsideration of NY N301484;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NAFTA			
사실관계 Facts	<p>본 사안은 A사가 N301484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사안으로 N301484에서 사건 대상인 케이블 모뎀과 Wi-Fi gateway에 대해 중국산으로 판정한 사건임.</p> <p>N301484의 판결내용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이블 모뎀과 Wi-Fi gateway는 HTSUS, 8517.62.00으로 분류함 -케이블모뎀은 MB7220, MB7420, MB7621, 그리고 Wi-Fi gateway가 있는 케이블 모뎀은 MB8600과 MG7310, MG7315, MG7540, MG7550, MG7700, MT7711으로 <u>모든 모델이 멕시코에서 조립됨</u> -모든 부품은 멕시코로 수출된 중국산임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쇄회로기판조립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함 2. PCBA를 압착삽입과 나사로 고정된 6개의 플라스틱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상자에 조립함 3. 접착성 고무제발침용발(adhesive rubber feet)을 바닥에 붙임 4. 각 케이블 모뎀에 라벨과 식별번호를 부착 <p>※케이블 모뎀들은 직접회로에 의존하며 펌웨어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Broadcom에서 개발됨. 하지만 다양한 국외지역에서 개발된 코드(code)의 양을 수량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역을 알 수 없음. 단지 미국에서 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것만 명시함</p> <p>CBP는 N301484에서 NAFTA협정에 따라 멕시코에서 만든 모뎀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실질적 변형시험에 따라 HTSUS 9903.88.04에 따라 301조 적용 대상인 중국산으로 확인함.</p>			
쟁점사항 Issues	상기 모뎀들이 중국산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p>Law And Analysis</p>	<p>N301484에서 모뎀은 멕시코산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301조의 목적상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변형시험을 이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음</p> <p>이에 대해 CBP는 301, 232, 그리고 201조에 따른 현 무역구제의 적용을 위한 목적상 원산지를 결정할 때, 실질적 변형분석이 가능하다고 봄.</p> <p>19C.F.R. § 102.0에 따라, 102 표시규칙은 제한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함. 그러한 예는 원산지 표시임</p> <p>미연방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미리 용도가 정해진 품으로서 이미 제조된 형태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더 이상의 가공처리 없이 최종상품으로 조립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결함</p> <p>참고판례: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p> <p>법원은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품목, 특성 및 용도를 살펴보고 실질적 변형 결정을 포함한 다양한 법원 결정들을 살펴본다고 함</p> <p>중국산 재료는 모뎀의 구성품으로서 이미 최종용도가 정해져 있었으며 구성품의 물리성은 멕시코에서의 조립 작업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음</p> <p>나아가 Broadcom은 다양한 국외지역에서 개발된 코드(code)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모뎀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단한 N301484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모뎀에 대한 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75> 전자음악 제어기(Electric music controll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375	카테고리 Category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8.09.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19.89 (추정)	O	15% (2019.9.1.-)	1,186	390
사례명 Case	전자음악 제어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n electric music controller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Ableton Push 2(Push 2)는 전자 음악의 생성 및 처리에 사용되는 미디제어기임</p>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p> <p>1. 표면실장기술(SMT)을 통해 bare보드에 프로세서, 플래시 메모리, LED 및 기타 다양한 전자 부품을 포함한 모든 필수 전자 장치를 채우는 방식으로 메인 PCBA 및 영상조절기판(fader board)을 생산함 -가공처리는 베트남에서 수행됨</p>			
쟁점사항 Issues	전자음악 제어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Push2의 원산지 국가와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제조된 메인 PCBA 및 영상조절기판 (fader board)은 완성된 미디조절기에 본질을 부여함</p> <p>부착, 조임, 교정 및 포장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은 복잡하지 않으며 하위 조립품을 인클로저에 결합해도 두 PCBA에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p> <p>따라서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과정으로 베트남 상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음. 이러한 관점에서 Push 2는 미국으로 수입 할 시 원산지 및 표시 목적상 베트남산으로 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전자음악 제어기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연번76> 카메라(Camera)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57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4.18.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품목번호 Tariff No	○	25% (2018.7.6.-)	178,881	75,114
8525.80 (추정)				
사례명 Case	카메라에 대한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cameras			
사실관계 Facts	<p>A사는 B사 카메라 모델 PXW-FS7M2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PXW-FS7M2의 펌웨어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여, 필수 부품중의 하나가 제조, 그러한 제조과정은 최종 조립, 펌웨어 프로그래밍, 그리고 설치, 교정, 테스트, 포장 및 운송으로 이루어짐 -해당카메라의 2개의 필수 부품은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신호 처리 보드(ISP 보드)임 2. 중국에서 일본산 이미지센서 유닛을 베이스(base), 고리(hook) 링, F 캐비닛, 외부(outer) 링 그리고 고리붙이 구멍쇠(ring plate)와 함께 조립함 3. 일본산 ISP 보드는 다양한 원산지부품과 함께 중국에서 조립된 후 완전한 조립을 위해 일본으로 운송됨 4. 일본에서 일본산 펌웨어를 ISP 보드 카메라에 장착하고 교정, 테스트 및 포장을 함 			
쟁점사항 Issues	카메라에 대한 301장 무역구제의 적용에 대한 원산지 결정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참고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 d, 989 F. 2d 1201 (Fed. Cir. 1993);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and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p> <p>그러나 만일 제조나 조립공정이 상품이 가진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단순한 경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p> <p>참고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 d, 702 F.2d 1022 (Fed. Cir. 1983)</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마지막 실질적 변형은 일본에서 초래되었다고 보아 최종완제품에 대한 원산지는 일본으로 판정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카메라의 원산지는 일본임.

<연번77>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606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9.24.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25.80.4000 (추정)	○	15% (2019.9.1.-)	17,689	12,710
사례명 Case	네트워크 카메라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 network camera.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Stick Up Cam Battery로 1080p 무선 네트워크 카메라임</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에서 표면 실장 기술(SMT) 프로세스, IC 프로그래밍, 부품 형성, 라우팅, DIP,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PCBA 패키징 등의 가공처리가 수행됨 중국에서는 포장풀기, 보호막처리, 렌즈 조립, 접착, 마이크 부착 그리고 스피커 기능, 시험 및 포장이 이루어짐 			
쟁점사항 Issues	네트워크 카메라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트남에서 만들어진 PCBA는 완성된 카메라의 본질을 이룸</p> <p>중국에서 이루어진 조립과정으로 PCBA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음</p> <p>따라서 PCBA를 생성하는 SMT 프로세스가 베트남에서 수행된 경우 카메라는 베트남 제품으로 간주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베트남임.			

<연번78> 3단 슬림형 저소음 차단기(Triple Slimline Low Noise Block)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3612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H170315		
2019.05.22.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29.90 (추정)	O	25% (2018.7.6.-)	36,230	21,902
사례명 Case	3단 슬림형 저소음 차단기에 대한 원산지 Country of origin of the WA Triple Slimline Low Noise Block (LNB)			
사실관계 Facts	<p>A사는 WA Triple Slimline Low Noise Block(LNB)에 관한 원산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LNB는 방송신호 수신 장치)</p> <p>제품 구성 및 제조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NB는 필리핀에서 완전히 조립됨. 조립공정은 특별 제작된 축전기 인덕터, 저항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페라이트 크리스털, 브로드컴을 포함한 122개의 부품을 인쇄회로기판에 통합함 2. LNB 내, 인쇄회로기판조립품에 두 개의 안테나를 부착 -대부분의 부품이 중국산이며 적은 수의 부품은 다른 국가에서 공급받음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쇄회로기판 조립품(PCBA)에 대한 마지막 공정은 영국에서 수행됨 2. 브로드컴 칩은 대만에서 조립되어 운영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됨 3. 필리핀에서 대만산 브로드컴에 영국산 펌웨어(PCBA 시스템/모듈 기능 시험과 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 조립이 이루어짐 4. LNB의 나머지 부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 주물 구성품인 기저주물(base casting)을 포함함 			
쟁점사항 Issues	LNB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인쇄회로기판조립품에 대한 마지막 조립공정은 영국에서 수행된 LNB에 대한 영국산 펌웨어 조립을 위해 필리핀으로 운송되어 대만산 브로드컴에 프로그램화함</p> <p>필리핀에서의 광범위한 가공처리와 영국산 펌웨어의 추가공정을 살펴보면, CBP는 필리핀으로 수입된 다양한 부품의 조립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 최종 완성품인 LNB가 제조되었다고 판단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LNB의 원산지는 필리핀임.</p>

<연번79> 광섬유커넥터(Fiber optic connector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277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8.01.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36.70 (추정)	O	25% (2018.7.6.-)	2,337	686
사례명 Case	광섬유커넥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fiber optic connectors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품목은 LC Quad 어댑터로 광섬유로 이용되는 커넥터임 2. LC Quad 어댑터는 플라스틱 구조 부품으로 구성되며 광섬유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됨 <p>공정과정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C Quad 어댑터는 2개의 플라스틱 어댑터 하우징 반분(halves), 4개의 뚜껑, 셔터 리테이너(shutter retainer), 금속 클립, 4개의 셔터(shutters), 2개의 마개, 4개의 세라믹 커버로 조립됨 2. 조립과정은 베트남에서 수행됨 3. 어댑터 하우징 반분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공급될 수 있으며 구성품의 편칭(balance of the components)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쟁점사항 Issues	광섬유커넥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어댑터 반쪽을 초음파로 접합하고 커넥터 부품을 삽입하여 광섬유 커넥터를 제조하는 조립공정은 기본적인 개별 구성요소의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p> <p>또한 조립 전, 다양한 커넥터 구성품은 최종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수행된 공정으로 개별 구성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음. 따라서 구성품 자체는 베트남에서 품목, 특성 및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업품으로 변경되지 않음</p> <p>조립된 LC 쿼드 어댑터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어댑터 하우징 반분이 광섬유커넥터의 본질을 제공한다고 봄</p>			

	<p>따라서 어댑터하우징 반분이 일본에서 공급되는 경우 LC 쿼드 어댑터는 미국으로 수입할 때 원산지 및 표시 목적상 일본산으로 간주되며 반대로 어댑터하우징 반분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된 경우 원산지는 중국이 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어댑터하우징 반분이 생산된 국가에 따라 달라짐. 일본에서 공급된 경우 일본산이며 중국에서 공급된 경우 중국산임.</p>

<연번80> 광섬유 카세트(Fiber optic cassett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907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9.18.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36.70.0000	O	25% (2018.7.6.-)	2,337	686
사례명 Case	광섬유 카세트의 원산지 및 301조의 적용 가능성 The country of origin and applicability of Section 301 trade remedies of a fiber optic cassette			
사실관계 Facts	<p>A사는 광섬유 카세트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광섬유/케이블 커넥터 모듈(카세트)로 부품 번호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BMC-SM-10N10120U, FB-MC-SM-10N24E024U는 13개의 LC광섬유 어댑터, 1개의 MTP 어댑터, 1개의 MTP 수 커넥터 및 0.6m의 광섬유 케이블 어셈블리로 구성됨 -모두 미국에서 공급됨 3. CART-SHSY288MTP는 24개의 MTP 어댑터, 24개의 MTP 수 커넥터 및 13m 광섬유 케이블 조립품으로 구성됨 -모두 미국에서 공급됨 -인클로저, 플라스틱 케이블 구성기, 분기 튜브 및 레이블/포장은 중국에서 공급됨 <p>시나리오에 따라 연결모듈을 제조하기 위해 미국산 광섬유에 다른 구성품이 추가되는 조립과정이 중국 또는 대만에서 수행됨</p>			
쟁점사항 Issues	광섬유 카세트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개별 섬유를 커넥터에 연결하고 커넥터를 인클로저에 삽입하는 조립공정은 기본이며 개별 구성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p> <p>조립 전, 개별 구성품은 수행된 작업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 최종용도가 미리 결정된 것임</p> <p>구성품 자체는 대만과 중국에서 수행된 작업의 결과로 수출시의 상품과 다른 새로운 품목, 특성 그리고 용도로 변경되지 않음</p> <p>조립된 카세트 원산지와 관련하여 완성된 카세트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광섬유케이블임</p> <p>두 시나리오 모두, 광섬유케이블은 커넥터의 추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으며, 조립 작업은 부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시키기에 복잡하지 않음</p> <p>따라서 부품 번호 FBMC-SM-10N10120U, FB-MC-SM-10N24E024U 그리고 CART-SHSY288MTP는 미국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301조의 적용대상이 아님</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미국임.

<연번81> 차량히터제어 스위치보드(Vehicle heater control switchboard)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435	카테고리 Category	Classification;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735009		
2019.03.04.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37.10.9170	O	25% (2019.5.10.-)	221,113	122,240
사례명 Case	차량히터제어 스위치보드에 대한 품목분류, 원산지 그리고 301장 무역구제의 적용 The tariff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01 trade remedy of a vehicle heater control switchboard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p>TJBA(vehicle heater control switchboard)는 인쇄회로기판조립품(PCBA), LCD 디스플레이, 주조플라스틱용기 및 패널, 스위치 작동기/액추에이터 패널 조립품, 클립, 나사 그리고 쿠션 개스킷(cushioning gaskets)과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로 구성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제조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부품(축전기, 저항기, LEDs,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및 22개의 tactile switches)제조단계 1에서 12단계에서는 노출된 인쇄회로기판에 표면실장(SMT)을 함 2. 13에서 15제조단계에서 PCBA에 대해 품질검수, 방수 그리고 6개의 개별 보드로 자름 3. 16에서 24제조단계에서는 인코더 스위치(encoder switch), LCD, 확산 시트(diffusion sheet) 및 하우징이 PCBA에 조립됨 4. 25에서 45제조단계에서 PCBA/LCD 조립품을 완전한 기능성 차량 중앙 제어판을 생산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 장식을 입힌 패널에 삽입한 다음, 스위치 작동기/액추에이터 패널 조립품, 손잡이 그리고 나머지 부품과 함께 조립됨 <p>-제시된 시나리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나리오: PCBA는 제조단계 1-12까지 태국에서 제조됨. 나머지 제조단계는 중국에서 수행됨 2.시나리오: PCBA는 제조단계 1-15까지 태국에서 제조됨. 나머지 제조단계는 중국에서 수행됨 3.시나리오: PCBA는 제조 단계 1-24까지 태국에서 제조됨. 나머지 제조단계는 중국에서 수행됨 			
쟁점사항 Issues	차량히터제어스위치보드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p>			

<p style="text-align: center;">Analysis</p>	<p>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태국에서 수행된 PCBA에 대한 SMT처리는 중요하며 개별 전자부품과 노출인쇄 회로기판을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으로 봄. 따라서 PCBA의 원산지는 태국임</p> <p>PCBA가 완전한 TJBA에 본질적 성질을 부여하고 TJBA에 나머지 구성품의 조립 (13~45단계)은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제공된 시나리오에 따라 TJBA의 원산지는 PCBA를 생산한 국가이며 이는 TJBA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결정임</p> <p>덧붙여 TJBA 스위치보드는 HTSUS, 9903.88.03에 따라 301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TJBA의 원산지는 태국임. HTSUS, 9903.88.03에 따라 301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p>

<연번82> 스위칭전원공급 장치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85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7.08.	변경규칙 Modifies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8537.10 (추정)	O	25% (2018.7.6.-)	304,839	152,943
사례명 Case	베트남산 스위칭전원공급 장치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switching power supplies from Vietnam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스위칭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 및 공정과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P1-J600GD-F12S, HP1-J650GD-F12S 및 HP1-J800GD-F12S로 식별되는 3개의 스위칭 전원공급 장치는 데스크탑 개인 PC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산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함 2. 베트남에서 저항기, 축전기, 집적회로, 퓨즈, 다이오드와 같은 부품을 인쇄회로 기판에 웨이브 납땜하여 조립함 3. 보드가 완성되고 기능테스트가 끝나면 PCB 조립품을 전원공급내에 장착하고 팬을 설치함. 다양한 배선 및 커넥터를 연결시켜 완제품을 작동이 잘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테스트함 			
쟁점사항 Issues	스위칭 전원공급 장치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산 부품으로 베트남에서 수행된 전원공급장치 제조과정은 전혀 새로운 품목, 특성 그리고 용도를 가진 생산품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변형이 있었다고 판단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스위칭 전원공급 장치의 원산지는 베트남임.</p>

<연번83> 태양광 패널(Solar panel)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29865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N227976 H095409 H261693		
2018.11.19.	변경규칙 Modifies	NY N227976 (2012.08.22.)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2018년	2019년(6월)
품목번호 Tariff No	○	25% (2018.7.6.-)	612,914	265,447
8541.40.60 (추정)				
사례명 Case	NY N227976의 변경고시; 원산지표시; 태양광 패널 Modification of NY N227976; country of origin marking; solar panels			
사실관계 Facts	<p>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 중국산과 비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태양광 패널은 5개 (GSP-6, GSP-12, GSP-30, GSP-40, GSP-55)의 서로 다른 크기의 태양광 패널이 있음. 이들의 구성은 다음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산 다결정 태양전지(polycrystalline solar cells) -일본산 앞면 시트(front sheet) -중국산 에틸렌 질산비닐공중합체(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양극산화한 알루미늄 뒤판(anodized aluminum back board), 가장자리 보호기(edge protector), 쇠고리(grommet), 접합상장, 케이블 보호기, 인터커넥터, 모션(buss bar), 절연 테이프, 차단 다이오드, 퓨즈 그리고 링 단자 중국에서 위 부품들을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제작함 본 사례의 태양광 패널은 가정용 패널이 아닌, 보트와 비상 차량 및 보조 레크리에이션 장비를 위한 보조 충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패널임 			
쟁점사항 Issues	원산지 표시 목적상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는 어디인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 기존 판정례(NY N227976)</p> <p>CBP는 이전 규칙 NY N227976에서 중국에서 수행된 태양광 패널 제작은 중국산과 비중국산 모든 부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봄. 이에 따라 CBP는 중국을 완성된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로 결정함</p> <p>* 최근 결정례(HQ H298653)</p>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 (19 U.S.C.1304) 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원산지국을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 19 U.S.C.2518(4)(B)에 따르면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국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국가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는, 2) 다른 국가에서 재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상품의 경우, 그러한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상업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룬 경우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CBP는 태양광 패널은 중국에서 중국산 및 非중국산 부품으로 조립되었으나 위와 같은 조립으로 제작된 태양광 패널의 제작국이 아니라 그러한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이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둠. 즉 다결정 태양전지를 주요 부품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부품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고 봄</p> <p>주요할 점은, 태양광 패널의 본질을 구성하는 다결정 태양전지가 중국에서의 조립공정으로 그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태양광 패널의 원산지는 독일임.</p>

<연번84> 보드상의 LED 칩(LED Chip on Board, COB)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390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6.12.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41.40.2000 (추정)	○	25% (2018.7.6.-)	29,173	17,487
사례명 Case	일본산 보드상의 LED 칩에 대한 원산지 결정 The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of the LED Chip on Board from Japan			
사실관계 Facts	<p>A사는 LED lighting “Chip on Board” (COB)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성품인 COB는 다양한 LED dice/diodes를 포함하고 있으며 COB의 기반은 사각형의 알루미늄 기판임 2. 알루미늄 기판은 양극 및 음극 전극을 일본에서 새겼고 완성된 COB에는 드라이버, 하우징, 스위치 또는 모듈과 같은 다른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p>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산 알루미늄 기판은 일본에서 양극 및 음극 전극을 새겨 중국으로 운송함 2. 중국에서 알루미늄 기판은 단일의 큰 시트에 다수의 사각 알루미늄 시트의 형태를 가지며 각 시트는 개별 COB로 절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판에 양극 및 음극 전극에 일본산 LED dice/diodes를 전선으로 잇고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기판에 부착시킴 -dice/diodes는 실리콘 수지로 피복되어 습도를 제거하고 COB로부터 최종적으로 발산된 광에 색을 부여하거나 부족한 형광체를 공간적으로 분산시킴. 이후 COB를 절단한 후 검사를 거친 뒤 포장함 -절단은 길이와 너비에 따른 간단한 절단 과정으로 개별 사각형 형태의 COB를 생성함 			
쟁점사항 Issues	COB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제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작업은 일본산 구성품/재료를 중국산 제품으로 변형되었다고 할 만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p>			

	<p>LED와 다이오드를 접착제, 페이스트 그리고 결합절차를 통해 알루미늄 기판에 접착한 중국에서의 일련의 가공처리와 너비와 길이에 따라 절단한 행위는 완성된 COB가 새로운 특성 및 용도를 가진 다른 상업품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음</p> <p>따라서 일본산 LED dice/diodes와 기판은 완성된 COB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과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COB의 원산지는 일본임.</p>

<연번85> 태양모듈(Solar modul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511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63205 H261693 H298653		
2019.06.21.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41.40.60 (추정)	O	25% (2018.8.23.-)	612,914	265,447
사례명 Case	요르단산 태양모듈의 원산지; 201조 무역구제; 3303.45.25, HTSUS The country of origin of solar modules from Jordan; Section 201 trade remedy; 9903.45.25, HTSUS			
사실관계 Facts	<p>※대통령 선포(Presidential Proclamation 9693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 광전지(CSPV) 셀 및 특정 상품을 결합한 CSPV셀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태양모듈 및 패널은 태국 또는 베트남에서 제조된 태양전지 및 기타 여러 국가 (중국,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요르단)에서 제조된 다양한 부품으로 요르단에서 제조됨</p>			
쟁점사항 Issues	태양모듈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품이 반덤핑, 반보조금, 또는 다른 세이프가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변형분석이 적용됨 참고판례: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741 F.2d 1368, 1370-71</p>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부품의 일부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행된 작업의 정도와 구성품이 그 정체성을 잃었는지 그래서 새로운 상품의 일부로 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p> <p>태국과 베트남산인 태양전지는 요르단에서 이루어진 조립과정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p> <p>따라서 태국 태양전지가 태양패널에 사용된 경우, 완성된 태양모듈 및 패널의 원산지는 태국이 되며, 베트남산 태양전지가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는 베트남이 될 것임</p> <p>태국이나 베트남 모두 HTSUS, Chapter 99, Note 18(b)상의 목록에 없기 때문에 추가 관세 부과로부터 면제받음</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어느 나라의 태양전지가 태양패널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태국이 될 수 있으며 베트남이 될 수 있음.</p>

<연번86> 태양광모듈(Solar modul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538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H261693 H298653		
2019.08.12.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41.40.60 (추정)	O	25% (2018.8.23.-)	612,914	265,447
사례명 Case	베트남산 태양모듈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solar modules from Vietnam			
사실관계 Facts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한국산 태양전지 및 중국산인 다양한 다른 부품을 베트남에서 공정 처리하여 태양광 모듈/패널을 생산함			
쟁점사항 Issues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참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참고사례; HQ H26169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BP는 한국과 폴란드에서 태양전지(말레이시아 또는 한국산)로 제조한 태양전지패널 문제를 검토 2. 본 사례에서 CBP는 모든 구성품의 원산지를 고려하였고 이어 태양전지가 결합된 국가가 아닌 말레이시아 또는 한국에서 태양 전지가 생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함 			

	<p>3. CBP는 태양전지패널조립의 결과로 실질적인 변형이 없었다고 판단함</p> <p>4. 따라서 말레이시아산 태양전지가 사용된 경우 원산지는 말레이시아, 혹은 한국산 태양전지의 경우에는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결정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한국산 태양전지는 베트남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할 당시, 표시 목적상 한국산으로 간주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한국임.</p>

<연번87> LED 화이트닝 장치(LED whitening devic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526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Country of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3.04.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43.70.9960	O	25% (2018.7.6.-)	154,725	78,190
사례명 Case	LED 화이트닝 장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301조의 적용여부 The country of origin, marking, and applicability of Section 301 trade remedy of the LED Whitening Device			
사실관계 Facts	<p>A사는 LED 화이트닝 장치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설명 및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ED 화이트닝 장치는 집에서 치아를 미백하기 위한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되는 전기용품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LED 화이트닝 장치임 2. LED 화이트닝 장치는 LED 조명 스트립, 배터리, 인쇄회로기판조립품(PCBA), 충전기 및 케이블, 플라스틱 하우징 및 구조적 부품(structural components) 및 포장재로 구성됨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산 LED 스트립을 중국으로 운송한 후 중국산인 나머지 부품과 함께 조립함 2. 기능성 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LED 스트립을 다양한 플라스틱 부품에 삽입하고 배터리, PCBA 및 인클로저/마우스피스와 결합함 3. 조립 후, LED 화이트닝 장치는 미국으로 배송되어 미국산 화이트닝 겔과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됨 <p>LED 스트립과 관련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ED 웨이퍼는 대만산으로 미국으로 운송되어 LED 스트립으로 처리됨 2. 웨이퍼에서 결정을 수거하고 플라스틱 기판에 인쇄할 액체 LED 잉크 생산을 미국에서 완성시킨 공정은 중요하며 따라서 LED 스트립은 미국산임 			
쟁점사항 Issues	LED 화이트닝 장치에 대한 원산지국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p>2. 지워지지 않으며</p> <p>3. 영구적인 방법으로</p> <p>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의 원산지국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p> <p>-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LED 스트립은 완성품인 LED 화이트닝 장치의 성격과 기능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구성 요소를 나타냄</p> <p>또한, 미국산 LED 스트립을 중국으로 운송되어 조립된 공정과정은 LED 스트립의 조립품에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변형이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함</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LED 화이트닝 장치는 미국산임.

<연번88> 전기 커넥터(Electrical connecto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542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8.08.08.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44.20 (추정)	O	25% (2019.5.10.-)	7,926	5,502
사례명 Case	전기 커넥터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an electrical connector			
사실관계 Facts	<p>제품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커넥터, RSX17-39253임 2. 커넥터는 3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 커넥터 본체, 3개의 6" 22 AWG 절연 구리 와이어 및 열 수축 튜브로 구성됨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에서 구매한 일본산 커넥터 본체를 중국으로 배송하여 3개의 절연 전선을 커넥터에 납땜하고 열 수축 튜브를 적용함 2. 커넥터 조립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송함 -구리선과 열수축 튜브는 중국에서 생산됨 			
쟁점사항 Issues	전기 커넥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에서 수행된 가공처리는 복잡하지 않은 작업이며 커넥터 와이어의 추가 역시 단지 센서를 부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커넥터에 영향을 주지 않음</p>			

	<p>따라서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과정은 일본산 커넥터에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기 커넥터 RSX17-39253은 미국으로 수입할 시, 원산지 및 표시 목적상 일본산으로 간주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전기 커넥터의 원산지는 일본임.</p>

<연번89> 동축케이블 조립물(Coaxial cable assemblie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3423	카테고리 Category	Marking, Country of Origin
2019.04.12.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44.20 (추정)	○	25% (2019.5.10.-)	7,926	5,502
사례명 Case	중국산 동축케이블 조립품에 대한 원산지와 표시 The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 of coaxial cable assemblies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동축케이블 조립품;P14614-03(초음파기계용 변환기 장치제조에 사용)의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에서 개별 동축 전도체를 제조하여 내부 코어, 유전체, 외부 전도체 및 외부커버를 함께 조립하여 단일 동축 전도체를 생산함. 이후 여러 개의 동축 전도체를 모아 편조된 EMI 보호막(braided EMI shield)과 외부 재킷과 함께 케이블 조립품에 포함시킴. 최종 공정을 위해 중국으로 운송 2. 중국에서 케이블 조립품을 길이에 맞게 절단, 경우에 따라 센서가 부착됨. 케이블 끝을 노출시키고 도전체 인쇄회로기판에 납땀함. 부싱(bushing)을 추가하고 라벨을 부착함. 이후 미국으로 운송함 3. 미국에서 케이블 조립품을 완성된 변환기로 제조함. 미국산 초음파 배열을 수입된 케이블 조립품 한쪽 끝에 납땀하고 도전체 하우징은 다른 끝에 조립함. EMI 보호막을 추가하고 미국산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화함. 			
쟁점사항 Issues	동축케이블 조립품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PCBA 및 센서의 통합을 위해 중국으로 보내진 일본산 동축케이블조립품은 중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았다고 봄</p> <p>따라서 동축케이블조립품의 원산지는 일본임</p> <p>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관련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4.1(d)는 궁극적인 구입자를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마지막 사람으로서 그러한 상품을 수입당시의 형태 그대로 받게 될 자로 정의함 - 19 CFR 134.1(d)(1)에서 만일 수입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 상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공정을 수입품에 추가할 경우, 제조자가 궁극적인 구매자가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p>참고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p> <p>동축케이블 조립품은 미국에서 실시한 가공의 결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국 제조자가 수입품인 동축케이블의 궁극적인 구매자가 되며, 19 CFR 134.35에 따라 궁극적인 구매자 수중에 들어간 컨테이너만이 원산지 일본으로 표시되어야 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동축케이블의 원산지는 일본임.</p> <p>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동축케이블에 대한 궁극적인 구매자가 그러한 상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공정을 하는 경우 내용물이 아닌 컨테이너에만 원산지 일본으로 표시되어야 함.</p>

<연번90> 충전케이블(Charging cabl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4648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W968434		
2019.06.13.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8544.42 (추정)	O	25% (2019.5.10.-)	42,016	18,795
사례명 Case	베트남산 충전케이블의 원산지 The country of origin of charging cable from Vietnam			
사실관계 Facts	<p>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음. 해당 상품은 3피트의 충전기 및 동기화 케이블로 케이블 한쪽 끝은 USB 커넥터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다양한 모바일 장치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커넥터가 있음</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케이블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베트남에서 조립됨 2. 중국산 절연전선은 USB와 조명 커넥터에 맞는 길이로 절단하고 이들 역시 중국산임 3. 완제품은 소매용을 위해 포장됨 			
쟁점사항 Issues	충전케이블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제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해당 충전과 동기화 케이블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 수행된 조립과정은 수출된 상품으로부터 새로운 품명,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전혀 새로운 다른 상업품으로 중국산 부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켰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충전기와 동기화 케이블은 중국산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충전케이블은 중국산임.			

<연번91> 자가접착식 피부전극(Self-adhesive cutaneous electrod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074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60613 H248851 H259473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18.11 (추정)	○	25% (2018.7.6.-)	1,329	508
사례명 Case	정부조달; 1979년 무역법, Title 3(19 U.S.C. § 2511); CBP 규정 177장 B파트; 자가 접착식피부전극; 실질적인 변형 U.S. Government Procurement; Title III, 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 U.S.C. § 2511); Subpart B, Part 177, CBP Regulations; Self-Adhesive Cutaneous Electrode; Substantial Transformation			
사실관계 Facts	A사는 콜롬비아에 본사를 둔, 의료장비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두 가지 형태의 자가접착식 피부전극에 대한 원산지결정을 요청함. -1형태: 일회용 자극성 스티커형 패드 표면 전극 -2형태: 일회용 기록 스티커형 표면 전극 A사의 제품 구성과 제조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1. 극소량의 접착제로 전도성 플라스틱과 안감을 붙인 도선에 전기전도성 하이드로겔로 코팅한 스티커형 패드로 구성 2. 자가접착식 피부전극의 모든 기술과 디자인을 수행함 3.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여 하이드로겔은 미국에서 전적으로 제조됨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미국산 대량의 하이드로겔과 한국산 도선을 중국으로 운송함 -미국산 하이드로겔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됨 -한국산 도선은 한국 공급 업체가 선을 절단, 소켓 핀을 구부린 뒤, 선의 끝에 있는 연결선에 붙임 2. 중국에서의 공정은 미국산 대량의 하이드로겔을 미국산 전도성플라스틱과 중국산 안감에 코팅한 다음 한 패드씩 기계로 절단함 5. 미국산 전도성 플라스틱과 중국산 안감 사이에 한국산 도선을미국산 접착제를 사용한 패드에 붙임 6. 완성된 자가접착식 피부전극은 플라스틱 주머니와 골판지 포장재에 넣어 미국으로 운송함			
쟁점사항 Issues	자가접착식 피부전극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p>법과해석 Law And Analysis</p>	<p>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 U.S.C2518(4)(B)에 따르면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 한 국가에서 재배, 생산 또는 제조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는, 2) 다른 국가에서 재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상품의 경우, 그러한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상업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룬 경우 본 사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음. 상품에 본질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단순한 조립이나 가공처 리를 거쳤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여기서 중요한 구성요소란, 미국산 하이드겔, 전도성 플라스틱, 접착제 그리고 한국산 도선이라고 봄 특히 미국산 하이드로겔이 의료장비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자가접착식 피부전극의 원산지는 미국임.</p>

<연번92> 디지털 온도계(Digital thermomet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76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735009		
2019.04.19.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25.19 (추정)	O	25% (2018.8.23.-)	8,675	3,243
사례명 Case	디지털 온도계에 대한 301조 무역구제의 적용 및 원산지국 The country of origin and application of the Section 301 trade remedy of a digital thermometer			
사실관계 Facts	A사는 디지털 온도계에 대한 원산지 및 301조의 적용에 대한 결정을 요청함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이스라엘에서 sensor plate, flex circuit 그리고 온도센서와 같은 제조과정을 거친 이중센서프로브(double sensor probe)와 등록상표가 붙은 소프트웨어를 제조함 2. 중국에서 운송하여 중국산인 전자 및 전자기계 구성품, 플라스틱, 실리콘 등이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산 센서/프로브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조립됨			
쟁점사항 Issues	디지털 온도계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 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 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이스라엘산 센서/프로브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온도계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 구성품을 주요 부품으로 봄 그렇다면 중국에서 이루어진 추가 공정처리는 위와 같은 디지털 온도계의 본질을 구성하는 구성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단순조립으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함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이스라엘임.			

<연번93> 온도센서(Temperature senso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1952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4.01.	참조규칙 References	563205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25.80 (추정)	O	25% (2018.8.23.-)	1,191	1,283
사례명 Case	멕시코산 온도센서에 대한 원산지 결정 The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of a temperature sensor from Mexico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온도센서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서미스터(thermistor), 온도칩(temperature chip)과 커넥터가 달린 절연비닐배관 같은 구성품을 포함함</p>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도센서의 조립은 두 개의 개별 국가에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미스터는 영국에서 제조되었다가 중국으로 수출됨 -중국에서 중국산 단선을 서미스터 칩에 추가함 -상품을 멕시코로 운송하여 전기선, 보호관, 전기 셸 커넥터(electrical shell connector)와 수축 튜브가 추가됨. 이러한 부품은 중국과 미국산임 -완제품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운송함 			
쟁점사항 Issues	온도센서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neral Note 12(b), HTSUS, (19 U.S.C. § 1202)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NAFTA 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인한 상품” 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인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획득되거나 생산된 제품; 또는 (ii)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에서 변형 -General Note 12(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 비원산지 재료는 (r),(s),(t) 하위 규정에 서술된 품목분류에서 변경을 이룸 -그 외에 (r),(s),(t) 하위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은 품목 분류에서 변경이 요구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원산지 재료로 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iv)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었지만 “parts” 규정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가 하나 이상 그러한 상품 생산에 사용된 경우 품목분류변경을 겪지 않음 			

	<p>-상품이 캐나다, 멕시코 및/또는 미국 영토로 조립 또는 분해되지 않은 형태로 수입되었지만 일반해석규칙2(a)에 따라 조립 상품으로 분류된 경우</p> <p>-그러한 상품에 대한 품목 호는 상품 자체와 그 일부(parts)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더 이상 소호로 분류되지 않으며 혹은 그러한 상품의 소호는 소호 상품 자체와 그 일부(parts)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함</p> <p>-그러한 상품이 60-63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eneral Note(c)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지역 가치 함량이 60%이상(관세평가법이 사용된 경우)이고 순원가법이 사용된 경우 50% 이상이어야 그러한 상품은 General Note의 모든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봄</p> <p>온도센서가 멕시코에서 조립에 비원산지부품(즉, 캐나다, 미국 또는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 생산된)을 포함함. 결과적으로 General Note 12(b)(ii)(a)에 따라 NA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General Note 12(t)에 규정된 품목분류에서의 변경을 거쳐야 함.</p> <p>문제의 온도 센서가 분류되는 해당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p> <p>(A) 기타 다른 호로부터 소호 9025.11에서 9025.80으로의 변경; 또는</p> <p>(B) 다른 호로부터 변경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적 가치 내용이 적어도 다음과 같아야 함.</p> <p>-관세평가방법이 사용된 경우 45%</p> <p>-순원가법 사용된 경우 35%</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온도센서의 비원산지 부품은 General Note 12(b)에 따른 필요한 품목변경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문제의 온도센서는 NFATA 협정상의 특혜대우를 받음으로써 멕시코산으로 간주 됨</p> <p>단, 온도센서 생산에 사용된 구성품이 HTSUS, 9903.88.01에 따라 무역구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는가라는 문제가 남음</p> <p>법원은 새로운 상품으로 되었다고 봄. 즉, 다양한 국가의 부품으로 조립된 온도센서는 멕시코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새로운 상품인 온도센서가 되었다고 판단함</p> <p>이러한 결과, 멕시코에서 수행된 제조 작업은 다양한 구성품을 멕시코산 온도센서로 변형시켰고 따라서 온도 센서는 HTSUS, 소호 9903.88.01에서 언급된 U.S. Note 20(b)에 열거된 추가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온도센서는 멕시코산이며 추가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음.

<연번94> 유량계(Flowmeter)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3986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2019.08.02.	참조규칙 References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26.10.2040	O	25% (2018.7.6.-)	274	119
사례명 Case	유량계의 품목과 원산지; NAFTA 표시 Country of origin and classification of flowmeter; NAFTA marking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유량계에 대한 품목과 원산지 판정을 요청함[도전성매체(electrically conductive mediums)의 유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전자기 미터]</p> <p>유량계의 제품 구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량센서 2.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신호변환기인 송신기 <p>유량센서에 관한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량센서는 캐나다산 단자함(T-box)과 중국 또는 프랑스산 유동관으로 이루어짐 2. 캐나다에서 유동관을 캐나다산 T-box와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일단 유동관과 T-box를 연결하면 작동 가능한 유량센서가 됨 <p>송신기에 관한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신기는 프랑스로부터 기억장치(memory unit)없이 캐나다로 수입되어 완전히 프로그램 및 짝지어짐 -기억장치는 송신기와 유량센서가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함 2. 송신기 작동을 위해 Sensor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chip (“PROM”)을 송신기 접속반에 설치함 3. 캐나다에서 프로그램화된 PROM은 송신기와 조립함 <p>유량센서의 운송과 관련한 시나리오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신기와 센서가 함께 주문, 배송, 인보이스된 경우 2. 송신기와 센서가 개별적으로 주문, 각각 인보이스 되었지만 함께 운송된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함께 운송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동일 선하증권으로 배달됨 -최종 소비자는 유량계를 완성하기 위해 송신기에 유량센서를 장착하기만 하면 됨 			
쟁점사항 Issues	표시 목적상, 유량계의 원산지는 캐나다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p>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p> <p>2. 지워지지 않으며</p> <p>3. 영구적인 방법으로</p> <p>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동 규정 134.1(g)에 따르면 NAFTA 협정국의 상품은 NAFTA 표시규칙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또는 미국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음</p> <p>102.11(a)(1) 및 102.11(a)(2)에 따르면,</p> <p>① 상품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됨</p> <p>② 국내 재료로만 생산됨</p> <p>③ 해당 상품에 포함된 각 외국 물품은 102.20에 규정된 품목 분류의 적용 가능한 변경을 거치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규칙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킴</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102.11(a)(1) 및 102.11(a)(2)규정상, 완전히 캐나다산으로 상품이 제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AFTA 협정국의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분류상 적절한 변경을 거쳐야 함</p> <p>유량계를 이루는 송신기와 유동관은 중국 및 프랑스산임</p> <p>유량계가 HTSUS, 9026.10.20.으로 분류되는 반면, 송신기와 유동관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표시목적상 유량계의 원산지는 캐나다임</p> <p>※CBP는 유량계가 NAFTA상의 특별관세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는 다루지 않음. 또한 유동관은 중국 또는 프랑스로부터 수입될 수 있음에 주목함</p> <p>중국산인 유동관은 캐나다에서 유량계로 조립되면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유량계의 원산지는 캐나다산으로 표시함.

<연번95> 포켓네트워크시험장치(Pocket network testing device)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243924	카테고리 Category	Country of Origin Marking
	참조규칙 References	968000 H014068 H284523 H284617		
	변경규칙 Modifies	H014068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30.40.0000	O	25% (2018.7.6.-)	11,521	3,658
사례명 Case	A사의 포켓네트워크시험장치;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가진 모바일 폰; 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marking; Mobile telephone with specialized software; A사의 pocket network testing device			
사실관계 Facts	<p>※본 사례는 H014068 판결에 대한 수정임.</p> <p>제조상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A사의 포켓네트워크 시험장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기본적인 네트워크 셀 설계 (cell planning)작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네트워크를 확인, 유지 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됨</p> <p>상품에 대한 제조 및 운송사항은 다음과 같음. -스웨덴에서 디자인된 핸드폰 핸드셋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조립, 핸드폰에 카메라, 음악 및 비디오 플레이어 그리고 FM라디오를 통합,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함 -중국에서 조립된 핸드셋은 스웨덴으로 운송 후, 스웨덴산 포켓소프트웨어를 장착함</p>			
쟁점사항 Issues	포켓네트워크장치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본 사안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변형문제는 “기술과 관습법” 이 혼합된 문제로 봄 참고판례: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CCPA 1982)</p> <p>CBP는 다양한 원산지의 구성요소가 완제품으로 조립될 때,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품목 구성 요소의 원산지 국가, 국가 내에서 발생한 처리 범위 및 그러한 처리로 인해 새로운 품명, 특성 또는 용도로 제품이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함</p> <p>즉, 스웨덴에서 개발한 A사의 소프트웨어를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조립된 휴대폰에 장착한 것은 휴대폰의 기능 및 용도에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음. 즉 스웨덴이나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조립된 기존 휴대전화에 설치해도 휴대전화의 사용 및 기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임</p> <p>또한 A사의 device가 장착되기 전, 휴대폰은 식별할 수 있는 상용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 덧붙여 스웨덴에서의 A사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해당 제품을 휴대폰으로 제조하는 것 자체와 관련이 없음</p> <p>따라서 A사의 소프트웨어는 추가 기능을 구성할 뿐, 핸드폰 자체로서의 기능에는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A사의 포켓의 원산지는 중국 또는 말레이시아 또는 휴대폰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품이 생산된 기타 제조국임.

<연번96> LL300N 송신기(LL300N transmitt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6145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735009		
2019.09.23.	변경 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31.49.9000	O	25% (2018.7.6.-)	47,583	23,666
사례명 Case	LL300N transmitter기의 원산지 및 301조의 적용 The country of origi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01 trade remedy of the LL300N transmitter			
사실관계 Facts	<p>제품 및 각 제품에 대한 원산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기[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포함함. 예)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모든 부품들이 중국으로 수입된 후 중국에서 조립됨 2. 수평 조정 플랫폼(중국산) 3. 하단 하우징 조립품(중국산) 4. 배터리 도어 조립품(중국산) <p>※LL300N에 대한 모든 연구 및 개발은 독일에서 수행됨</p>			
쟁점사항 Issues	LL300N transmitter기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원산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중국에서 다양한 국가의 부품으로 최종상품인 LL300N으로 조립함</p> <p>이러한 부품에는 독일산 모터, 기어휠, 말레이시아산 IR-LEDs와 계산기 보드, 영국산인 leveling vials, 일본산 레이저 다이오드, 그리고 필리핀산 IR 수신기 TSOP32230이 포함됨</p> <p>위와 같은 부품으로 수행한 조립과정은 기능성 LL300N 송신기를 갖추기 위한 중요한 공정처리이며 송신기뿐만 아니라 구성품에 대한 변경에 영향을 미침</p> <p>따라서 공정과정으로 개별 구성품을 다른 새로운 기능과 목적을 가진 상품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때문에 원산지는 중국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원산지는 중국임.			

<연번97> 액추에이터 제어기(Actuator controller)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824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735009		
2019.03.20.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032.10 (추정)	O	25%	7,777	3,152
사례명 Case	세르비아산 제어기에 대한 원산지 및 301조의 적용 The country of origin and application of Section 301 trade remedy of a controller from Serbi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액추에이터 제어기에 대한 원산지와 301조의 적용에 관한 판결을 요청함.</p> <p>제품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제어기는 축전지(capacitor),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 그리고 나기판(bare board)으로 구성됨 PCBA의 기능은 자동차의 환기시스템을 위한 전동 액추에이터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것임 <p>부품 원산지는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한국산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 축전지는 멕시코산과 일본산임 <p>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르비아에서 모든 부품을 PCB에 표면장착 납땜함 			
쟁점사항 Issues	액추에이터 제어기에 대한 원산지는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인 방법으로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 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제어기 PCB조립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은 세르비아에서 수행된 <u>SMT(Surface Mount Technology)</u> 공정처리로 인쇄회로기판 및 개별 전기부품을 하나의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제어기 PCB 조립품에 대한 원산지는 세르비아임</p> <p>※SMT 공정처리는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직접 실장할 수 있는 표면 실장 부품 (surface mounted components, SMC)을 전자 회로에 부착시키는 방법임</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액추에이터 제어기의 원산지는 세르비아임.

<연번98> LED 라이트 스트링(LED light string)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NY N302899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2019.03.13.	변경규칙 Modifies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405.40.8200 (추정)	O	25% (2019.5.10.-)	4,316	1,831
사례명 Case	중국산 LED 라이트 스트링에 대한 원산지 결정 The country of origin determination of an LED light string from China.			
사실관계 Facts	<p>A사는 “Sound Activated Light String” 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요청함.</p> <p>소리 활성화 라이트 스트링 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산 LED 라이트 스트링 2. 대만산 집적회로 3. 베트남산 인쇄 회로기판(IC 및 기타 부품), 플라스틱 배터리 칸(칸막이 부품 포함) <p>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공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CB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면 실장 기술 공정으로 이뤄짐. 대만산 집적 회로, 마이크로폰, 저항기 및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모든 전기부품이 보드에 추가됨 -완성된 PCB는 배터리 칸(컨트롤 박스)에 추가됨 2. 배터리 칸(제어기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라스틱주입몰딩과정에서 제조됨 3. 라이트 스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산 라이트 스트링을 절단하고 코일로 감음. 한쪽 끝을 주석에 담은 후 인쇄회로기판에 납땀함 -인쇄회로기판과 LED 스트링을 배터리함(컨트롤 박스)에 부착함 			
쟁점사항 Issues	LED light string의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베트남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은 라이트 스트링을 길이에 맞게 절단하고 배터리 칸 (제어기 상자)에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 스트링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을 주지 않음</p> <p>따라서 공정과정에서 라이트 스트링으로서 본질적인 특성과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에 라이트 스트링을 제작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p>
<p>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p>	<p>소리 작동 라이트 스트링의 원산지는 중국임.</p>

<연번99> 끈 조명 세트(String light sets) 판정사례

날짜 Date	규칙 Ruling	HQ H304093	카테고리 Category	Origin
	참조규칙 References	557796 N303559 N299944 N300781		
	변경규칙 Modifies	N303559		
품목번호 Tariff No	대중보복관세 대상여부	보복관세율	한국의 대미수출량 (단위, 천불)	
			2018년	2019년(6월)
9405.40.60 (추정)	X		7,421	5,151
9405.40.84 (추정)	X		30,314	9,760
사례명 Case	뉴욕 유권해석에 재고려(NY N303559); 끈 조명 세트의 원산지 Reconsideration of New York Ruling Letter (NY) N303559; Origin of string light sets			
사실관계 Facts	<p>본 사안은 N303559에 대한 결정을 철회한 것임. N303559 결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소형 백열전구를 포함한 끈 조면세트를 이루는 구성품은 미국산 UL label과 필리핀산 전기선 및 포장 재료로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에서 구입 제조하였는데 이들 부품에 대한 공정처리로 필리핀산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이루었다고 판단함</p> <p>NY N303559에서 설명한 필리핀에서의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반 와이어와 플러그 조립 2.일반 와이어와 연결기 끝과의 조립 3.일반 와이어 절단 및 단자 장착 4.전구 및 램프 홀더 조립 5.조명 끈 연결 6.조명 끈 조립 및 꼬 7.시험, 라벨링, 포장 및 검수 			
쟁점사항 Issues	소형백열전구 끈 조명의 원산지국은 어디인지의 여부			
법과해석 Law And Analysis	<p>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p>-1930년 개정 관세법(19 U.S.C.1304)304장 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 또는 포장의 특성에 따라 읽기 쉽고 2. 지워지지 않으며 3. 영구적인 방법으로 4. 미국에서 최종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물품 원산지의 영어지명이 표시되어야 함 			

	<p>-19 C.F.R. § 134.1(b)로 본 규정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의 재배, 생산 또는 제조 국가임</p> <p>다른 국가에서 상품에 추가 재료나 작업이 이루어져 그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품명, 특성 또는 용도에서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함</p> <p>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Y N300781에서 모든 구성품(미국산인 UL label과 캄보디아산인 포장재료 제외)은 중국에서 구입한 것임 2. 조명세트의 구성품은 캄보디아에서 조립됨 3. CBP는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조명 구성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조명세트의 원산지국을 중국이라고 봄 <p>본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p> <p>끈 조명의 구성품은 필리핀에서의 공정으로 개별 정체성을 잃지 않음</p> <p>끈 조명의 구성품은 그 최종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필리핀으로 수입 시, 필리핀에서의 공정과정으로 인한 용도 변경은 없었음</p>
원산지 판정 Determination	소형백열전구 끈 조명의 원산지국은 중국임.